

B12-2-38

안권정보자료실

CPb1.8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 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 ◆ 1주제 :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 ◆ 2주제 :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들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 일 제 : 1997년 6월 5일(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 어디서 :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CPb1.8

주최/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762-4194)
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사회평론 길, 월간 말
주관/ 전국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742-3180)
후원/ 한겨레신문사, 내일신문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 ● ● ● ● ● ● ● ● ● ● ●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 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 ◆ 1주제 :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 ◆ 2주제 :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들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 ▶ 언제 : 1997년 6월 5일(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 ▶ 어디서 :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주최/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762-4194)

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사회평론 길, 월간 말

주관/ 전국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742-3180)

후원/ 한겨레신문사, 내일신문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 언제 : 1997년 6월 5일(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 어디서 :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 하차 영국대사관과 세실 암)

사회 : 황인성(과거청산국민위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 기조연설 : 민족민주열사와 6월항쟁 / 이창복(추모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1주제 :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주발제 정치적 타살인 의문사에 대해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의학과 의문사 / 이윤성(서울대 교수, 법의학)

보조발제 사례연구(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김용갑) / 김선수(변호사)

토론

장임원(중앙대 교수, 병리학)

천정배(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허영춘(유가협 의문사지회장)

◆ 2주제 :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주발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와 정신계승의 방향 / 배동인(강원대 교수, 사회학)

보조발제 옥중 희생자의 문제 /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토론

김순태(방송대 교수, 법학)

손호철(서강대 교수, 정치학)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주최/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사회평론 길, 월간 말

주관/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후원/ 한겨레신문사, 기독교방송, 내일신문

■ 차례 ■

〈기조연설〉 민족민주열사와 6월 항쟁

/ 이창복(추모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7

〈제1주제〉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주발제

정치적 타살인 의문사에 대해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13
법의학과 의문사 / 이윤성(서울대 교수, 법의학) / 31

보조발제

의문사 사건 사례 발표

(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김용갑 열사 사건) / 김선수(변호사) / 36

토론

의문사 규명에 있어서의 국과수의 한계 / 장임원(중앙대 교수, 병리학) / 90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 / 천정배(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 91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의문사 / 허영춘(유가협 의문사지회장) / 93

〈제2주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주발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와 정신계승의 방향

/ 배동인(강원대 교수, 사회학), 박래균(과거청산국민위 사무국장) / 101

보조발제

옥중 희생자의 문제 /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 107

토론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방향

김순태(방송대 교수, 법학) / 118

민족민주열사 주장의 정당성 / 손호철(서강대 교수, 정치외교학) / 120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 123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자료 / 129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단 / 131

열사들의 주장 / 133

옥중희생자 및 운명하신 장기수선생 명단 / 142

옥중희생자에 관한 도움 자료 / 143

인혁당 사건 / 145

의문사 자료 / 149

<기조 연설문>

민족민주열사와 6월 항쟁

이창복(추모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87년 6월 민주항쟁이 10주년이 되는 올해도 류재을학생(조선대 2년)이 대선자금공개와 김영삼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다 꽃다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 청년의 조국과 민중을 향한 승고한 사랑과 고결한 뜻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외세와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조국의 자주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세운 문민정부 하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수많은 젊은 목숨들의 희생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의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위원회와 6월 항쟁 1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두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와 그 일가족들에게 열사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전해드릴 수 있게 된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은 먼저 간 그분들의 승고한 뜻이 온 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명예회복의 궁극적 완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간 역사의 실체적 진실이 한 점의 가감없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5월 18일, 광주에서는 광주항쟁 17주년을 맞아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새 묘역에서 정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성대한 5·18기념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광주의 명예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대한 기념식만으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명예회복은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광주항쟁정신이 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잡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광주의 진실은 아직도 미완인 채 남아 있습니다.

진상규명, 형사처벌,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이라는 광주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은 지난해 제정된 5·18 특별법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실규명위원회도 특별검사도 기념재단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5.18재판은 과거청산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통해 5·18문제는 막을 내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건재를 시위하

고 있는 당시의 내란 집권세력들은 지금 틈만 나면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에 대한 조기사면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화해차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무조건 사면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면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차기 권력에서의 영향력 확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자들에 대한 단죄와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광주항쟁의 명예회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광주문제만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10년전 6월항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월 민주항쟁의 불꽃이 되었던 박종철 군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박종철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것은 87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연행사유는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중이던 박종운군의 소재를 찾기위한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박종철군은 수배자나 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종철군은 강제연행된 직후부터 다음날 오전11시까지 10시간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엄청난 폭행과 물고문 그리고 전기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당국은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하려고 열버무렸습니다. 경찰이 박군을 심문한 지 30분 후 책상을 '탁'치니 '썩'하고 죽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은 각 언론사에 지침을 시달 '박군이 심장마비로 쇼크사한 것으로, 1단 기사처리'하도록 지시를 함과 동시에 당국은 박군의 심장마비 쇼크사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박군이 평소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떠했습니까? 부검결과 박군은 수십군데에 걸쳐 피멍자국이 있었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은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곧바로 박군의 고문치사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와 추도미사, 기도회, 항의농성 등이 잇따랐으며 사태가 심각하게 흐르자 다급해진 당국은 고문사실을 인정하고 고문에 참가한 경관 2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구속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감출수록 더 큰 진실로 되살아나 기필코 거짓을 거짓으로 증거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수많은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을 가슴 속에 묻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87년 6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우리 민중은 독재에서 민주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이래 자주와 통일 그리고 민주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세우고, 학생들은 자주적인 학생회를 기초로 전국 대학생의 대표조직을 건설하였으며, 농민들도 각지에서 농민회를 조직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각계 각층의 자주적인 진출을 바탕으로 우리 민중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조직체를 건설하기에 이르러, 민통련을 시발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그리고 지난 91년 결성 이래 6기를 맞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으로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조직적 결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의식도 폭넓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대중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자신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스스로들을 조직화하여고,

시민운동도 팔목한 성장을 거듭하여 나름의 체계와 질서를 구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식인, 예술인, 교사, 종교인들도 분야별로 자신들의 자주적인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심지어 군대와 경찰내에서도 양심선언과 민주화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6월항쟁 이후 우리사회는 구석구석에서부터 수많은 자주적 조직운동이 싹터 나왔으며, 정치적요구를 가진 운동에서부터 시민, 환경, 교통, 인권, 주택 등 생활민주주의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운동이 일어나고 결실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6월 민주대항쟁이 제기했고, 수많은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이 남기고 간 과제는 아직도 미완인 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화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일이야말로 6월항쟁과 먼저 간 민족민주열사의 뜻을 완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 이 중차대하고 절박한 과제를 이 세기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새깁시다. 특별히 올해 97년, 역사적인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모든 민족민주세력의 단합된 노력으로 반드시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자주·민주·통일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월항쟁의 커다란 역사적 물줄기가 오늘 자주와 민주,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토대가 되고 있는 한, 그리고 민족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 10주년이 되는 오늘 먼저 가신 민족민주열사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열사들의 순결한 마음과 뜻을 민주화와 통일로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우리들의 뜻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주제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서론

(1)의문사의 정의

"의문사란 죽음 자체가 시간과 경위, 동기들이 불명확하며 정확한 사인들이 은폐된 채 교묘하게 자살등으로 위장되어 있는 의문의 죽음을 말한다."¹⁾

"타살당했음이 분명한 심적 및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 은폐.조작되어 사인조차 철저하게 묻혀져 버린 죽음"²⁾

"의문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 즉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는 시간, 경위, 동기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사인에 관한 진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죽음: 사인이 불명확한 이유가 은폐나 조작때문이라는 의심이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3)사인의 은폐 및 조작의 동기가 정치적 이유나 정부기관의 책임 회피에 있는 죽음: 반민주적 정부 또는 군사독재정권이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군에 장애가 되는 인물들을 살해하고 은폐조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불법연행 및 고문등으로 우연 사인과 관련한 진실의 은폐 및 조작의 방법으로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 수 있다.

①성급한 강제부검

1.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산하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 내자식 죽인놈들 제명에 못살리라, p.75

2.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인권백서 1988-89, p.157

②유족 부재증 부검

③화장 강요

④일방적 가매장 후 유족에게 연락

⑤증거품 은닉

⑥시신의 변형조작³⁾

위와같이 여러가지 개념요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의문사'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죽음을 의미한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사인을 정확히 해명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압력과 은폐의 노력에 의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의문사'라 함은 보통 후자를 가르킨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의문사' 사건이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살해가 명백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인 은폐가 필연적으로 동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나 제도화된 권력에 의해 살해되었다거나 은폐되었다는 의혹과 정황은 존재하지만 확증은 없는 것이다.⁴⁾ 현실적으로 의문사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정치적 의문사'라 함은 한국의 현대사, 특히 5공이후 형성된 일정한 역사적 개념이다.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로서 일정한 정치적 동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동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단순 의문사는 구별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동기는 노동운동, 사회운동, 정치활동, 학생운동등을 포함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은 남미의 실종사건(disappearances)과도 구별되게 하는 측면이다. 즉 실종사건의 경우 대체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한국의 의문사는 시신은 발견되고 관련된 정황과 증인들이 존재하지만 다만 그 사인의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일 뿐이다.

한편 현실적인 운동과정에서 '의문사'는 '열사'와 동열에 서 있다. '민족민주열사'라는 범주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열사'외에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 분류하기도 한다⁵⁾. 포함하는 이유를 "구조적 타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민족민주열사'는 "스스로 죽음을 결행한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벼랑에 내몰려 그런 결행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타살임에는 동일하다 해도 죽음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분신, 투신, 할복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타살임이 분명하고 그것이 투쟁전선에서의 죽음이 되 사인진상규명이나 법적 복권이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희생자'는 "정치적 타살임이 명백함에도 사인진상이나 법적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차병직변호사, 한국에 있어서의 의문사 문제", 미발행원고, p.1

4. 박찬영, 우리사회의 의문사에 대한 새로운 조망

5. 1990년에 나온 '민족민주열사회생자자료모음'에 따르면 '민족민주열사편'과 '희생자편'으로 나누고 있다.(민족민주열사·희생자활동추모제준비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모음: 살아서만나리라, 1990 참조)

(2)한국의 현대사의 의문사

한국의 현대사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정치적 의문사를 낳았다. 정치적 압제와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고문이나 가혹행위, 암살등의 생명권침해가 잇따랐다. 그 가운데 죽음의 타살여부와 가해자, 그 동기, 과정등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의문의 죽음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독재치하에서 정권에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죽음의 사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의문사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의학적으로 사인을 어느정도 밝혀낸 죽음조차도 그 유족과 주변인사들에 의해 의혹이 가시지 않아 의문사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인에 대한 의혹을 과학적으로는 결코 풀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당시로서는 엄혹한 독재치하였기 때문에 유족들 스스로도 문제삼기가 어려웠고 언론이나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어려웠던 사건들이다. 정작 이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증거들이 산일되고 법적 공소시효는 경과되어 어떠한 진상조사작업이나 법적 처단 및 배상작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종길 교수사건과 장준하 선생사건은 유신시대 벌어졌던 가장 유명한 의문사들이다.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최종길은 1973.10.19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수사를 받던 중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 유가족들에게 강압하여 서둘러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술한 의문이 제기되어 고문치사의 가능성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유신통치하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6월항쟁 이후에서야 비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한편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던 장준하는 1975.8.17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등산중에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경찰은 등산중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역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로 보고된 경우는 주로 반정부 활동에 관련된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었다. 이 사건들은 정치권력의 개입이 추정되는 단서들이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자살등으로 처리되었다⁶⁾. 물론 가족과 친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의문사규명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도움과 변호사단체와 의료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진행되었고 그에 관한 자료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5공하에서의 의문사 사건의 숫자는 그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공화국을 거쳐 심지어 김영삼정부하에서까지 지속되고 있다.

(3)미완의 과제, 의문사의 해결

6. 한국인권의 실상, 역사비평사, 1992, p.129

1987년 6월 항쟁과 이로인한 1988년의 민간정부 출범은 당연히 이러한 과거 군사정권하에서의 정치적 의문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사인규명을 통한 진실의 발견,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떠한 조사도 진행된 바 없었다. 아직도 이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혹은 밝은 햇빛을 가다리며 암흑속에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전.노 두 전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5.18과 비자금이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의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5.18외에도 '역사바로세우기'의 대상으로는 억울한 구속자들의 재심, 재산강탈피해자들의 회복, 해직자들의 원상복구등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의문사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을 품고 죽어간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인하여 더욱 큰 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족들에게 의문사의 죽음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한다는 점은 가장 절박한 '역사바로세우기'이다.

2. 정치적 의문사의 유형과 실상

(1) 유형과 분류

- 1) 장소에 따른 분류: 일반의문사와 군부대내에서의 의문사(이것은 강제징집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재분류)
- 2) 동기에 따른 분류: 정치적동기, 관계기관의 책임회피
- 3) 피해자에 따른 분류: 학생운동, 노동운동
- 4) 피해의 규모에 따른 분류: 개별적의문사, 집단적의문사)
- 5) 조작방법에 따른 분류: 타살을 자살 또는 사고사로 위장, 타살이나 그 배후 또는 정치적 동기만을 은폐⁸⁾

(2) 한국의 의문사의 실상

7. 멀리로는 박정희정권 초기의 국토건설단으로 동원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가까이로는 삼청교육대사건들이 집단의문사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체로 집단구타등의 가혹행위에 의한 죽음임이 은폐된 경우이다.

8. 차병직 변호사의 발제문

1) 의문사 숫자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분신·투신·활복의 방법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오랜 운동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투옥후유증, 불의의 사고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19명에 이른다. 그 중 노동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92명, 학생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60명, 빙민·노동·군경·일반시민들이 64명등으로 분류되고 있다⁹⁾. 물론 이 가운데 정확히 의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1990년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모음'은 35명의 의문사 사건을 열거하고 있다¹⁰⁾.

〈한편 1988년 11월 4일 평화민주당이 제5공화국 통치기간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34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¹¹⁾〉

문영수(운전사), 김성수(서울대생), 김상원(노동자), 박선영, 박관현, 정경식, 정성희, 김두황, 최온순, 김용권, 정연관, 노철승(군부대 자살로 발표), 이승환, 박필호, 정재곤, 박상구, 허완근, 이윤성, 한영현, 한희철(서울대생), 최우혁, 임기윤(목사), 이종원(서울대생), 신호수(노동자), 박종철, 고정희, 이태춘, 박종근, 이이동, 이승삼, 장춘근, 서대일, 장영식, 이동일

2) 수사기관 및 감옥에서의 의문사

박종철군사사건이 시사하듯이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과 가혹행위가 따르기 쉽고 이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사인과 과정을 제대로 밝히기 보다는 은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문사로 남게 된다.

비교적 오래된 사건 가운데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임기윤목사사건이다. 임기윤목사는 유신체제 하에서 부산지역에서 가장 열렬하게 유신반대투쟁을 전개했던 목사였다. 1980.7.19 보안사에 연행되었다가 3일만에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7.26 사망하였다. 고혈압으로 쓰러졌다는 기무사의 발표는 평소 임목사의 혈압, 외상의 존재 등에 비추어 고문치사의 가능성성이 높게 제기되었다.

1986.6.19 전남 여천군 대미산 동굴바위틈에서 목맨 시체로 발견된 신호수사건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의문사로 분류할 수 있다. 방위병 근무중 북한 뼈라를 자취방에 보관한 것이 문제되어 서울서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고려대경제학과 재학중 입대하여 구로서 의경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장영식 상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선불리 종결하면서 가족들과 합의를 봄으로써 오히려 의문을 부추기

9. 위 열사회보 제6호, p.22

10. 위 '살아서 만나리라', pp.288-290.

11. 대한변호사협회편, 위 인권보고서 제3집, pp.90-91

는 꼴이 되었다¹²⁾.

고정희사건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1988.1 청와대, 미대사관, 독일대사관등에 “노태우부정집권”등의 투서를 한 고정희가 경찰에 연행되어 서초경찰서 대공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강남 성모병원 정신 병동에 강제입원한 뒤 병원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이 이사건의 경위다. 그러나 이사건에서도 단순자살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¹³⁾.

조선대생 이철규사건도 굳이 분류하자면 여기에 속한다. 1989.5.10 의문의 변사체로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는 교지 ‘민주조선’의 발간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중이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권까지 발동되어 조사가 벌어졌으나 아무런 결론없이 끝남으로써 ‘의문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¹⁴⁾.

1991.5.6 구치소 수감중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후송되어 가료중 투신한 것으로 발표된 박창수사건 역시 수사기관과의 관련하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는 서울구치소에서부터 안기부의 전노협탈퇴를 집요하게 강요받았던 사실과 부검결과가 당국에 의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등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3) 강제징집과 녹화사업과정의 의문사

‘녹화사업’이란 “병역법 제19조(지원), 시행령 제94조(학적변동)에 의하여 학원소요 과련 학사 징계로 1981.11 ~ 1983.11 사이에 입대조치된 자 447명에 대한 정훈교육계획”이었다. 이 ‘녹화사업’은 1982.9부터 시작되어 1984.11 폐지될 때까지 보안사에서 교육대상자로 분류, 관리한 인원은 429명이며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265명이었다. 당시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된 것은 “문제학생의 급격한 입대 증가추세로 좌경의식의 군내 유입 증가는 물론, 일부 문제사병들은 군내 의식화 조직, 구성, 획책 및 학원소요에 가담하는등 안보위협”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녹화사업’ 중 사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¹⁵⁾.

계급	입영일자	서명	사망일	입영전학교
이병	83.3.18	김두황	83.6.8	고려대
이병	83.4.22	한영현	83.7.2	한양대
이병	83.3.29	최온순	83.8.14	동국대
일병	81.11.28	정성희	82.7.23	연세대
일병	82.11.26	이윤성	83.5.4	성균관대

12. 대한변호사협회편, 1987.1988도 인권보고서 제3집, 역사비평사, p.88

13. 안경을 끼었던 고정희의 경우 투신현장에서 안경이나 깨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신의 단서가 될만한 환자복이 영안실에서 소각되었으며 현장에서 아무런 사진촬영도 없었다. 아무런 유서나 메모조차 없었으며 사고전날에도 결혼, 수영강습등 퇴원후의 생활설계를 했던 점들이 의문점으로 제기되었다.(위 열사회보 7호, p.79)

14. 자세한 의문점은 위 열사회보 7호, pp.87-92

15. 국방부의 국회제출자료

이 사건들은 당시 대체로 사고사, 자살등으로 처리되었다. 군당국은 “제시된 사망자 8명의 군수사 기관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조사중에 사망한 자는 이윤성이며, 조사종료후 2일후 사망한 자는 한희철이고 기타 인원은 본사업과 무관한 안전 및 정신질환에 의한 자해사고였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조사중에 사망하거나 조사직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혹행위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도 굳이 ‘녹색사업’ 대상자들이 그토록 “안전 및 정신질환”이 많았으면 ‘자해사고’를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군당국이 발표한 불행한 가정비관이라든가, 사고경위 등에 관한 허구가 상당히 드러나 그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들의 학생운동전력, 군대 내부에서의 사찰 및 특별관리, 유무형의 ‘전향압력’과 정치적 요구 등의 사실이 확인된 마당에서 타살이거나 자살의 강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4) 기타 군부대내의 의문의 죽음

‘녹색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군부대내에서의 의문사는 계속되었다. 특히 1987년 이후 숫자의 증대는 사회의 민주화와 군부대내의 민주화가 일치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다가 카츄샤병으로 입대한 김용권 상병의 죽음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의문사였다. 1987.2 소속군부대 막사에서 목매어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고 미8군은 부검결과 사인을 호흡장애로 인한 자살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고 김용권 의문사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행적불확인, 프락치강요와 이를 거절한 데 대한 구타, 보안부대의 평소 감시와 고문, 목을 맨 침대난간이 1.2m밖에 되지 않아 자살이 불가능한 점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타살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로 또 하나의 의문사로 남고 말았다.¹⁷⁾ 구태혀 정치적 의문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군부대 당국이 발표한 죽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일종의 의문사가 적지 않다. 특히 군부대라는 특수한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곳에서 그 죽음의 원인과 배경이 정확히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증대되기 마련이다. 1987.5.11사망한 박상구(당시 21세, 하사관)사건이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농약음독에 의한 단순자살로 발표되었으나 “농약음독에 의한 사체의 특징을 찾아보기 힘든 대신 목을 졸린 흔적과 어깨와 다리등에 칼자국이 있으며 귀에서 피가 흘러나와 있었던 의문점”등이 발견되었다¹⁸⁾. 1987.12의 정연관 상병의 사망은 당시 대선 기간중에 부재자투표과정에서 야당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집단구타당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많았다¹⁹⁾. 1988.6 외박후 귀대한 우인수 일병이 부대안에서 사망하여 당국은 일사병으로 발표하였으나 하루 뒤 가족에게 연락한 점, 사체의 혈흔상태등에 비추어보아 구타등에 의한 사망의혹이 제기되었다. 우일병 역시 성균관대 재학중 입대하였다. 1988년 동국대 한의과 졸업생인 박종근이병도 방위병생활중 근무지 창고에서 의문의 소

16. 위 국방부의 국회제출자료

17. 자세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편, 1987.1988 인권보고서 제2집, 역사비평사, pp.87-88 참조.

18.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열사회보 제7호, 1997.5, p.77

19. 대한변호사협회편, 인권보고서 제3집, pp.89-90

사를 당했으나 자살의 이유가 없고 유서등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²⁰⁾.

이러한 군대내의 의문사는 1990년에도 지속되었다. 고교시절부터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였던 박성은은 방위병으로서 군부대내의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하였다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외출하였다가 거주지 부근 놀이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건직후 평소작성한 문건이 모두 분실되었고 부대에서의 억류사실이 은폐되는 등의 의문점을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다.

5) 학생들의 의문사

위에서 본 군대 내에서의 의문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 희생자들은 대학생출신이다. 학생들의 의문의 죽음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한 활동과 역할이 커졌음을 반증한다. 대학내에서, 노동현장에서, 병영에서 대학생출신자들이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탄압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이었다.

1985.10.12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우종원 서울대학생의 죽음은 5공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의문사사건 중의 하나였다. 당시 삼민투사건으로 수배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자살이유나 유서, 의상이 없었다는 것이 당시 유족들의 강력한 주장이었다.

1986.6.21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스키스쿠버에 의해 시체로 발견된 서울대 김성수 역시 경찰의 자살단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타살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중앙대 이내창사건이다. 이내창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서 1989.8.15 거문도 앞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실족의사로, 학생들은 타살로 주장하였으나 정확한 경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한겨레신문이 당시 안기부 인천분실 직원이 같은 배에 동승한 사실을 밝혀내 보도함으로써 명예훼손 공방이 번지기도 하였다.

학내사정으로 피살가능성이 높게 제기된 경우는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회장 김용갑사건이 있다. 김용갑은 학생회장으로서 학교재단의 비리와 학교의 폭행적 운영을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다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살체로 1990.3.28 발견되었다. 경찰의 단순 교통사고 결론에 대해 학생들은 그 근거를 반박하며 학원당국에 의한 타살로 주장하고 있다²¹⁾.

6) 노동자들의 의문사

노동자들이 정치적 의문사의 사례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정치적 성향을 띠고 진행되어 왔음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정치운동의 한 형태로 진전되어 왔으며 한 사회의 노동억압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일반 사회보다는 훨씬 물리력에 의하여 해결할 충동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개

20. 대한변호사협회편, 인권보고서 제3집, p.90

21. 자세한 것은 김용갑열사추모사업회, 김용갑열사4주기자료집 참조.

별 단위사업장에서의 의문사는 사회전체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그사이에 진상의 은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것이 대학사회에서의 의문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 창원 소재 대우중공업에 근무하던 정경식씨가 노조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충돌 후 1987.6.8 행방불명되었다가 그해 12.12 사체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그 사체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씨의 사체로 가족들에 의해 확인되면서 죽음의 은폐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었다²²⁾.

1988.6.6 광무택시 운전기사 문용섭이 구사대의 한 사람이었던 신세일에게 맞아 입원중 숨졌다. 문용섭은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평소 기사를 편을 들어 회사의 눈엣가시로 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폭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인 살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89.10.29 노조관련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던 협신사 노조원 이재호씨가 피살된 채 발견되었다. 단순폭행치사사건으로 경찰은 단정하였으나 회사측에 의해 파괴된 노조를 재건하는 시도를 하고 있던 차여서 유족들은 회사에 의한 타살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1991.5.6 구속중 이유불명의 상처로 안양병원에 후송되어 가료중이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수사당국은 투신자살로, 가족과 노동단체들은 안기부에 의한 타살로 이견을 보였다. 유족들은 의문사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재판진행중이다.

7) 기타의 의문사

1982.8.19 전남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구타와 폭행에 의해 8.22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한 문영수는 경찰에 의해 주소불명으로 허위조작되어 의대해부학교재로 인계되었다. 그후 담당 경찰관은 공문서위조 등의 죄로 처벌받았으나 폭행치사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무고한 한 시민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시신이 되어 나온 것도 억울한데 멀쩡하게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부교재로 사용되었다는 끔찍한 상황은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우리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1989.3.4 12.12사태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이었던 정병주가 행방불명된지 139일만에 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신병비관에 의한 자살로 단정하였으나 당시의 행적, 사체현황과 현장주변, 자살동기 등에 비추어 적지않은 의문을 남겼다.

1991.4.25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영환의 경우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며 민족문제, 군축문제등으로 활발한 논문발표를 했고 윤석양후원사업회 자료를 받았으며 기무사요원의 행

22. 대한변호사협회편, 위 인권보고서, p.89

적감시사실등이 죽음을 하나의 의문사로 남기고 있다.

3. 정치적 의문사의 배경

4. 정치적 의문사의 법해석

(1) 의문사와 형사법

의문사가 의문사 그 자체로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다. 의문사의 '의문'이 남아 있는 한 수사기관은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한 사람의 변사는 중요한 수사의 단서이며 이를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것이 '정치적 관련'이 있는 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의문사로 결국 남기곤 했다.

수사기관의 목인이나 방조하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조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자신을 가지게 된다. 적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바로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의 방해와 위협으로 희생자의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에 대해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결론에 동조·협조하거나 의혹을 가지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재조사는 더욱 어려워진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재심의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워 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조차 별로 없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간첩조작사건재심이 몇차례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2) 의문사와 민사법

의문사가 실제로 관련당국이나 그 직원에 의한 살해행위임이 밝혀지면 민사적으로 배상이 책임이 따른다. 결국 불법적인 생명권의 침해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상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그렇다고 생명권을 부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등이 그러한 생명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헌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생명권의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루고 손해배상의 기초가 된다.

23. 우리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6조 1항은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천부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3조 역시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문의 사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 가해자가 규명되지 않는 경우이다. 도대체 타살의 의문은 농후하되 증거가 은폐되고 산일되어 도대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살해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타살의 증거를 수집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조작을 한 경우에 그 진실을 밝혀내 민사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²⁴⁾.

(3) 법적해결의 한계 및 의미

이와같이 형사적 또는 민사적 방식이 모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해결의 곤란과 장애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상 접근에 가장 용이하고 법적으로 그 진실을 규명하며 나아가 책임자를 기소할 법적 책임을 지닌 수사기관의 방관·비협조 나아가 은폐·조작은 근본적으로 진상의 파악과 공개, 추적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구나 과거 독재정권하에서의 수사기관은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대등 그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한 상명하복의 체제하에 있었고 이 체제하에서 설사 양심적인 수사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선언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진상을 드러내기는 어렵다²⁵⁾.

둘째, 우리의 법제가 혹독한 군사독재와 그에 길들여진 수사·사법기관을 예상하지 않은 점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이 모두 합리적이며 준법적인 경찰관, 검사, 수사관을 전제로하여 작동될 수 있는 법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규정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시되지 못하였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 기구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하다. 예컨대, 공소시효제도, 재심제도, 고소·고발과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제도, 손해배상청구등이 모두 이러한 의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하지 못하다. 독재로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 이미 민·형사상의 공소시효는 경과하고 말았을 때이며 재심의 엄격한 요건이 이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문사의 유가족이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반 노력을 우리의 법체제는 지원하기는커녕 장애물로 등장할 뿐이다.

셋째, 우리사회의 전반적 매카시즘적 분위기는 결코 구체적인 인간의 원죄(怨罪)사건에 대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합리적 이성보다는 맹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오판과 그 희생자의 가능성을 더 크게 하기 마련이다²⁶⁾. 억울한 자의 항변의 목소리는 매카시즘에 휩싸인 군중과 그 선동가의 고

24. 한진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은 크게 보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25. 박종철사건에서도 고문경관은폐기도, 검안 및 부검의사에 대한 허위진단작성압력 등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6. 최근 박종철 전 서강대총장의 한통노조비난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보수우익인사들은 근거도 없이 박전총장이 매도한 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명예훼손을 아랑곳하지 않고 박전총장을 돋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함에 묻히고 만다. 그동안 의문사의 희생자들은 대체로 운동권 출신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일반 여론과 언론이 이러한 억울한 의문사사건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다.

넷째, 의문사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원활동을 지원하며 수행할 전문가와 단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의문사사건은 사실상 일반인이 보아도 잘 파악하기 어려운 법의학적, 법률적 문제가 산적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본격적인 참여없이는 의문사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의사단체, 변호사단체도 아직 의문사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의문사사건은 대체로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이나 유족들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고서는 당국의 발표내용을 제대로 반박하거나 구체적인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섯째, 세월은 쉬임없이 흘러가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거나 법적 대응방안을 깨달을 때는 이미 시효의 완성등으로 손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설사 의지가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손해배상채권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는데 승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과 소송행위에 친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사건당시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쟁송에 착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²⁷⁾.

다른 무엇보다도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김상원사건이다. 망인의 동생 김상호씨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형의 행적과 주변인물의 취재, 증거확보 등의 노력으로 결국 파출소경찰관들의 폭행에 의해 형이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사정을 밝혀냄으로써 가해경관들을 법정에 세우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개개를 올렸다. 다른 의문사사건에 교훈과 모범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결국 '권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였던 것이다. 최근 유가협이 중심이 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했던 민원은 대부분 별다른 성과없이 종결되었으나 일부 성과는 있었다. 예컨대, 1984.4.2 군복무중 부대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허원근의 유족이 낸 민원에 대해서 유족이 지적한 의문점에 대해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고 피신청인에 대해 자살로 단정한 조치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²⁸⁾

5. 정치적 의문사의 해결과정과 그 과제

27. 실제로 의문사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많은 의문사사건의 경우 처음 당하는 유족들이 수사기관의 회유로 말미암아 쉽게 확장에 동의하거나 합의를 함으로써 부검 등에 의한 충분한 진상규명기회를 놓친다.

28. 1996.10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회신' 참조

(1) 의문사 처리과정의 문제

① 물리적 충돌

사인이 명쾌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죽음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 은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된 정치세력의 거친 항의가 있게 마련이다. 심지어 시신을 지키려는 유족들과 그 주변세력들, 시신을 부검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인도받으려는 당국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예사로이 일어난다. 심지어 그 의문의 죽음을 당한 희생자의 죽음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장례식을 치르는 정치세력과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당국 사이에 장례식을 둘러싼 공방까지 벌어져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가 한바탕 소란과 혼란이 일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유족들이나 사망자가 소속된 단체등은 진상규명 이전의 장례를 거부하곤 하였고 당국은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강제해산 등의 강압적 조치를 취하곤 하였다²⁹⁾. 정치적 의문사는 이와같이 큰 이론과 충돌의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② 권위있는 기관의 부재

의문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제도권에 흡수되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따른 배상이 주어진 경우도 있다. 진상조사와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상원사건이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철규사건과 같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경우도 있었다. 일단 국회 국정조사단까지 구성된 것은 진상규명에 따른 국민적 요구가 커 이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규명 자체는 아무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수행해 낼 수는 없었다³⁰⁾.

한편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의혹사건을 제대로 다루는데 필요한 경찰·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수사기관 및 협력기관들이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행은 유

29. 박창수사건의 경우 경찰은 부검을 강행하기 위하여 영안실을 급습하여 사인규명을 요구하던 유족과 노조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시신을 '압수'하였을 뿐만아니라 142명을 연행하여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하였다.(1991.5.8 한겨레신문 기사)

30. 당시 국회 국정조사단은 "제보자의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어야 하며 공안기관의 무선교선일지, 상황일지, 차량이동일지등 미조사부분을 재조사해야 하는 점, - - - 이열사의 재부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하는 점, 이열사의 진상규명에 참여했던 공동의장단, 집행위원장 등의 구속, 수배를 저지하고 올바로 사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는 점등 사건해결의 본질적 문제를 뒤로 한 채" 끝나고 말았다고 평가받았다. (애국학생 이철규열사 추모사업준비위원회, "이철규열사, 고문살인 진상을 밝힌다" 제1집, 1990, p. 55)

족이나 관련당사자들이 이러한 수사기관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우러난다. 특히 과학적으로 신뢰를 가져야 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전반적 법의학 발전의 한계도 지적되어야 하겠거니와 그나마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유서대필사건과 같은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서 그 감정의 권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그 결론이 반드시 옳다거나 당사자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③ 공정한 절차의 담보

사인에 대해 100% 완전히 타살인지 자살인지 밝히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설사 관계당국의 공정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반드시 명쾌하고 당사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하물며 그 부검과 수사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할 때 유족들을 설득하기는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따라서 적어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죽음일수록 관련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와 참여하에 부검과 수사가 이루어져 있을 수 있는 모든 의혹을 차츰 해소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안된다³¹⁾³²⁾. 그러나 그동안 당국은 아무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없이 강제수사에 의존함으로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더욱 중대시켜온 것이 현실이었다. 때로는 사망자 본인의 유품이나 현장 유류품등이 제거되거나 현장이 파괴되고, 나아가 유족에게 아직 사망의 통지가 없거나 도착하기 전에 부검이 이루어지거나 이미 화장이 되어버려 사인을 그후에 검증하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뿐만 아니라 유족과 관련단체의 과민한 정도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장보존과 유류품의 내용, 모든 부검과 수사의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의 눈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내밀한 절차는 곧바로 의심으로 연결된다³³⁾. 따라서 공개적이며 관련자의 참여에 의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문사의 해결에서 첫걸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해결의 집단적 노력과 그 궤적

3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이 창립된 이후에는 이 소속의 의사들이 유족과 당사자의 요구로 그 입장에서 부검에 참여하는 사례가 높아졌고 당국도 이들과 아울러 유족들이 요구하는 관련자들의 부검참여를 보장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갔다. 예컨대, 이철규사건의 경우 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사들 외에도 박태훈(새날의원장), 윤장현(중앙안과원장), 김경수(조대 의대 4), 김성중(조대 의대2), 유남영변호사, 김현장(전민련), 정상용(국회의원), 지선스님, 김병균목사, 김인원(사업가), 양희승(동문), 이우승신부, 이인규(유족), 이승규(유족), 하종래(조대 총학부모협의회 부회장)등 많은 인사가 부검에 참여하였다.(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진상규명자료집 시안, p.59)

32. 강제철거에 대한 농성중 사망한 노점상인 이덕인에 대한 사체 역시 경찰의 부검을 위해 농성중인 유족과 동료,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한 후 이루어진 적이 있다.

33. 당장 이철규사건에서 바로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가검물의 봉인과 운송, 채취 및 조작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공개 가검을 감정의 조작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위 이철규열사 진상규명자료집시안, p.61)

1988.10.17 의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 의해 의문사유가족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10.25 유가협 산하 의문사진상대책위원회로 개편되었고 80년 이후 발생한 의문사 피해사례를 수집, 정리, 보고하고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정·청원·고소등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들은 5공화국하에서의 의문사를 국회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5공비리조사특위의 인권소위에서 의문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솔선하여 의문사사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를 통하여 5공청산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평민당과 민주당, 두 야당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 장이든, 정부의 장이든간에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의문사의 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구제노력이 맡겨질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법률적무지와 군사독재치하의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법적 구제책이 모색되지 못하였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김상원사건은 거의 유일하게 의문사가 사인이 밝혀진 케이스였다. 파출소에서 집단폭행당한사실이 은폐된채 시립병원으로 옮겨져 마침내 사망했던 김상원은 가족들의 노력으로 고소·재정신청·민사소송제기등의 노력으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의문사”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별사건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모임들이 생겨났다. 한진중공업 박창수추모사업회, 조선대생 이철규추모사업회, 동우대생 김용갑추모사업회, 중앙대학생회장 이내창추모사업회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문사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적 추모사업회의 한계때문에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 의문사의 개별 희생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개별후원회 역시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위 연대회의와 과거청산국민운동본부의 활동과 활발한 활동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활동기반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집단적인 노력이 경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모이고 활동경험과 자료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의문사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의문사의 해결과제

1) 진상조사가 최우선

지난 시대에 있었던 정치적 의문사는 뭐니뭐니해도 우선 진상조사가 최우선과제이다. 먼저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 명예의 회복, 배상과 가해자처벌등의 그 다음단계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다³⁴⁾. 그것이 정치적 음모나 보복에 의해 학살된 것임이 밝혀짐으로

34. 이런 점에서 정치적 동기에서 스스로 분신·투신등의 자살에 의해 죽음을 선택한 이른바 ‘열사’들과는 차원

써 비로서 가해자 또는 국가에 대한 요구나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³⁵⁾. 따라서 의문사의 진상을 가리는 국가기관으로서 또는 민관합동기구로서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가 가장 선결과제이다.

특히 의문사사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의 혼미, 증인의 사거, 증거의 인멸등에 의해 더욱 진실을 가리기 힘들어진다. 이 모든 증거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2) 포괄적 청산론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책임을 다 규명하고 다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21세기로의 전진을 다짐하면서 군사독재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³⁶⁾.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청산"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적 의문사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포기하고 포괄적으로 어떤 선언이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인적 사건들은 끝까지 진상이 추적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응분의 책임과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적어도 의문사 사건만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그 역울함이 풀릴 때까지는 '청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어떤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 묻혀 정리되거나 교환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3) 추모사업과 유족지원사업, 그리고 기록보존사업

의문사진상조사사업이 정부나 국회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척되지 않는 한 의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상태에서 남아있는 일은 결국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그 유족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개별적으로 그 희생자의 친지와 친구, 관련자들이 모여 추모사업회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그 추모와 유족지원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그런 추모사업회를 꾸리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국가개입이나 불법행위가 밝혀져 있는 이른바 '열사'의 경우에는 그 역사적 의미등이 충분히 규명되어있기 때문에 추모사업이 용이하지만 단순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체가 애매한 의문사에 대한 추모사업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³⁷⁾. 다만 그것

을 달리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진상규명의 문제는 없고 다만 그 죽음에 따른 기념과 추모, 명예회복등의 문제가 남는다.

35. 위 박창수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위 열사회보 7호, p.113)

36. 장기표, "21세기로의 전진을 위해 군사독재시절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청산할 것을 제안한다", 열사회보 제7호, 전국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1997.5, p.12

37. "추모사업은 항일독립운동과 자주·민주·통일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가사업이다"(위 열사회보 제6호, p.23)는 지적은 대체로 '열사'에 해당한다. 단순한 의문사에 대하여 국가가 추모사업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의문사에 대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이 단순자살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자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며 그동안의 누적된 비민주적, 비인간적, 비민중적 정체에 의해 구조화된 죄악의 인권유린사태의 하나"³⁸⁾라는 점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축소될 수는 없다.

또하나 중요한 과제는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기록이라도 제대로 모아두지 않으면 추후 있을지도 모를 진상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기록없이는 의문사를 제대로 밝히는 일이나 그 희생자의 죽음의 의미를 기리기도 힘들다. 기록은 쉽게 산일되고 증거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1990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을 제작할 당시에도 이미 자료의 한계를 보였다³⁹⁾. 한국사회처럼 급변하는 정치정세, 사회상황에서 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모아두는 일은 없다. 작은 문서보관소(archive)라도 만들고 자료보존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

6. 결론

"20세기 전반기 우리 선대들은 민족해방투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의병, 독립군, 지사, 열사, 의사등의 호칭은 항일전의 과정에서 붙여진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밖에도 무명의 애국자들이 해방투쟁에서 수없이 사라졌습니다. 후반기의 민주화투쟁 과정에서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민주열사, 민권투사들이 분신, 투신, 자결, 단식, 고문치사, 옥사, 의문사등의 이름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 역사는 조국해방투쟁에 몸을 바친 애국자들을 외면하였고 오늘 우리는 민족통일과 민주화투쟁에 온몸을 던진 희생자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역사의 집단 망각증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⁴⁰⁾

의문사의 유가족들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은채 사람들의 무관심과 망각속에 세월만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 고통이란 기실 세월의 경과에 무관하게 남아있는 상채기이다. 나치치하에서 강제수용소 경험을 한 유태인들의 2-3대 자손들에게 조차 일정한 정신적 후유증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이고 진상조사작업이다.

38. 김선수,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편, 위 인권보고서 제3집, p.91

39. "우리는 이 책자를 만들면서 슬픔과 분노를 함께 느껴야 했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씩이다. 그것은 어떤이는 얼굴사진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이는 악력하나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기에 그랬다. 그러나 또 죽어가면서 동지라 믿고 뒤를 부탁했던 죽은 자들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 쟁기지 않고 조그만 협조도 거부하는 모습에서 더욱 진한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이제사 이런 책자를 만들겠다고 나선 우리들에게 느끼는 분노이기도 했다"고 쓰고 있다.(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준비위원회, 살아서 만나리라, p.10)

40. 김삼웅, "민주화운동과정의 열사·희생자에 대한 의미",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열사회보 제6호, 1997.4, pp.14-15

보면 아직 고통을 직접 경험한 1세대에게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의 애타는 한 모정의 탄원은 바로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사건(정경식사건)은 진정인들의 다방면에 걸친 눈물겨운 노력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사법 당국에 이르기까지 진정서제출만도 20여차례, - - - 진정인은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0년이 넘게 자식 유골을 땅에 묻지 못하고 각계에 호소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밝히려는 진정인 김을선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감옥에 갇혀 수인의 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경찰철창신세를 밥먹듯 하는 운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진정인은 진실을 알리려는 피눈물나는 노력은 멈춤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정인의 한 맷힌 슬픔과 절규는 사회여론에 힘입어 1988년 5월 어버이날 특집으로 MBC TV 인간시대에 방영되어 '정경식의문사사건'의 진실과 거짓이 어디에 있는가를 많은 시청자에게 알리게 했고, 진정인은 검찰당국에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만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 - - 바라옵건대, 명백한 진실이 밝혀져 죽임을 당한 자식의 영혼이라도 달래주고 유골이라도 고이 묻어주며 다시는 이땅에 우리 가족들과 같이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건의 재조사명령만이라도 내려 다시 사건을 재수사가 되도록 선처해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⁴¹⁾”

한 노모의 애타는 심정을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는 하소연이다. 이러한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데 우리는 평화로운 잠을 이룰 수 없는 노릇이다. 고통받는 한 인간이 있을 때 엘리 위젤이 말했듯이 그는 바로 지구와 우주의 중심인 것이다. 그것이 단 한명의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책감의 정도와 크기는 달라질 수 없다. 이러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21세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주제 주발제문2>

법의학과 의문사

이윤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이란?

법의학이란 법의 적용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연구하고 제공하며, 공중의 보건과 안전을 도모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법의학은 의학의 한 분야이고, 법의학의 대상은 사회라 할 수 있다.

한편 법의학을 비롯한 의학에 '의문사'라는 말은 없다. 법의학의 대상이 되는 변사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의문을 가진 죽음이기 때문에 따로 '의문사'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변사체에 대하여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한결같은 태도로 법의학적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죽음이나 관심을 끄는 사망의 상황이라면 더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법의학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가장 홀륭한 부검이란 모든 의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부검이다.” 이른바 ‘의문사’라는 죽음에는 의문이 더 많을 터이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서는 ‘의문사’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기보다는 법의학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특히 부검과 관련이 있는 법의병리학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자 한다. 법의학의 목표는 변사체에 대하여, ① 왜 사망하였는지(사망의 원인)를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고, ② 사망과 관련된 정보와 의학적 소견을 아울러서 어떻게 사망하였는지(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며, ③ 사망에 이른 과정과 상처나 죽음이 발생한 시기를 추정하며, ④ 물증을 확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의부검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족의 허락이 필요 없다. 법의부검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안전에 목적이 있고 개인의 이익은 그 다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의부검은 병리부검과 다르다. 병원 부검이라고도 부르는 병리부검은 병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병의 경과를 이해하고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부검으로서 유가족의 허락을 얻어서 시행한다.

법의학의 분야

법의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가 참여한다. 의학 전반이 법의 적용에 쓰일 수 있으며, 특히 주검을 검사하는 법의병리학이 법의학의 대표적인 분야이고 그 외에도 여러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

(1) 법의병리학(法醫病理學, Forensic Pathology); 변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의 상황을 재구성한다. 법의학의 중심 분야이고, 가장 오래된 분야이다.

4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진 1996.1.20자 김을선의 탄원서.

- (2) 법의유전학(法醫遺傳學, Forensic Genetics); 혈청학적 방법이나 최근 개발된 유전자 검사 방법으로 친자 감정이나 신원 확인을 담당한다.
- (3) 법의독물학(法醫毒物學, Forensic Toxicology); 화학적 방법으로 독극물에 의한 사망원인 규명, 범행 현장의 화학물질 검출, 알코올을 비롯한 남용약물을 증명한다.
- (4) 법치의학(法齒醫學, Forensic Dentistry); 치아의 형태나 치흔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 (5) 법의인류학(法醫人類學, Forensic Anthropology); 인골이나 뼛조각으로 개인 식별이나 사망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 (6) 법과학(法科學, Forensic Sciences) 분야들; 그 외에도 법 적용에 쓰이는 과학 분야는 많다.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

의사가 주검을 검사하는 일을 검시라 하는데, 변사체를 수사하는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의 일부라 할 수도 있다. 주검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검안과 부검이 있다. 검안은 주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겉으로 보고, 만지고, 두드려 보기만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엑스레이 촬영이나 혈액 채취를 비롯하여 손상을 주지 않는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검을 통한 주검 검사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다만 주검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친지의 저항은 없다. 이유는 이들이 불법이며 법률에 금지되는 행위이다.

부검(剖檢, autopsy)은 해부(解剖, dissection)라는 방법으로 주검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필연적으로 주검에 대한 훼손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의학적 조사를 위해 달리 방법이 없다.

당연하겠으나 주검을 검사하려면 주검이 있어야 한다. 범죄의 객체인 주검(Corpus delicti)이 없으면 법의학적 조사는 시작할 수 없다. 실제로 거의 모든 상황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용의자도 있으나 주검을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또는 주검을 찾았으나 용의자와 관련 있는 사람의 주검인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성립하지 못한다. 현재 논란이 남아있는 것처럼 '5.18' 희생자가 더 있는지는 주검을 더 찾아내지 못하면 그저 논란의 수준에서 그치고 만다.

일반 조사할 주검이 있다면 법의학은 주검을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내고자 한다.

(1) 주검의 신원 확인; 어떤 사건에서는 주검이 누구인지를 알아냄으로써 사건이 거의 다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누가 살해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단박에 의심을 받게되는 상황이라면 살인자는 흔히 주검을 크게 훼손한다. 이런 때에는 주검의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2) 상처나 질병의 발생 시기; 사망과 관련된 상처나 질병이 발생한 시기가 중요할 때가 있다. 때로 상처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면서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쓰러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짓는 바람에 사망 현장은 피가 낭자할 수도 있다. 또 물에서 건져낸 주검이 과연 익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해한 다음에 물에 버렸는지를 밝혀야 한다.

(3) 원인 규명; 이런 상처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또 상처가 예기로 생긴 것인지 또는 둔기로 생긴 것인지를 밝혀야 하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흥기였는지를 확인한다. 예컨대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에서 총알이 어떤 총에서 발사한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용의자를 확인할 수 있다.

(4) 상처가 생긴 상황 구성; 부상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공격을 받았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는 어땠는지, 피해자는 가해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5) 다른 유발 요인이나 관여 인자;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는지,

보통 사람이라면 몇을 수 있는 출혈이 변사자의 간 기능 저하 때문에 계속 출혈하지는 않았는지, 특히 체질은 아닌지 따위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바뀔 수 있다.

(6) 상처나 질병이 발생한 때부터 생존 기간이나 생존 상태; 변사자에서 발견된 상처나 질병으로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 생존한다면 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한다.

(7) 사망 시각; 용의자의 알리바이 증명 여부, 보험 성립 여부, 상속 등에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사망 시각을 확정하기는 어렵고 추정할 뿐이다.

(8) 사망원인;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이나 손상은 수없이 많다.

(9) 사망의 종류; 법률적 사망원인으로 크게 병사와 외인사로 나누고, 외인사에는 ①자살, ②타살, ③사고사, ④불명이 있다. 부검 소견만으로 사망의 종류를 정할 수는 없고 사망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와 아울러서 판단할 수 있다. 검시제도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정할 경우도 있다.

검시의 내용

어찌 보면 주검을 검사하는 일은 환자를 진단하는 일과 같다. 환자의 말을 듣고 증상을 물어보고 진찰하고 검사하여 병을 진단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1) 과거력; 사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부검으로 확인해야 한다. 때로 미리 얘기를 들으면 편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아무런 정보 없이 부검하기를 유도할 수도 있다. 만약 편견이 생길 수 있는 부검의사라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부검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검이 '점치는' 일이 아닐진대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거짓이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2) 현장 상황; 사망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 현장을 볼 수 없다면 현장 상황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 또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부검의사가 사망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검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적을 수밖에 없다.

(3) 검시; 시체를 검사한다. 부검은 술식에 따라 원칙을 지켜서 빠뜨리지 않고 시행한다.

(4) 검사; 부검에서 얻은 시료를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 독극물 검사 따위를 의뢰하여 사망의 상황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검사 결과는 모두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부검 소견과 더불어 해석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5) 기록; 변사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를 얻은 근거를 확인해둔다. 상처란 상처는 모두 그리든지 사진을 찍어 두고 기록으로 남긴다. 필요하다면 상처가 없다는 점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경찰의 수사 보고서나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서도 확보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한 내용이나 자문을 얻은 결과를 확인한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에는 주저 없이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6) 해석과 의견 제시; 모든 정보와 보고서를 확보한다. 필요한 기록을 마친다. 해결할 문제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주로 사망원인과 사망의 종류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시하고 다른 의견들은 유보한다.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단순한 추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의견은 간단하고 명료하며 모든 소견과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법의학의 제한점

법의학 실체는 검시제도를 비롯한 법률 구조, 사회 제도, 관습이나 문화, 종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렇다 할 검시제도가 없다.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검시 제도(檢視制度)

우리 나라에서는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검시권도 당연히 검찰에 속한다. 그러나 몇 나라에서는 변사체에 대한 수사권을 따로 떼어 법의관이나 검시관이 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직종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 가지 사건에서 독립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사 기관과 같은 기관에 속함으로써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싸잡아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다. 독립하여 공정하게 검시하는 전문 기관이 생긴다면 불필요한 갈등은 크게 줄일 수 있다.

2. 사법부검 위주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다. 따라서 부검은 검찰의 관심에 따라 좌우한다. 일견 자살이 분명하거나 사고사이면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편이 많다. 법의부검은 형사 사건뿐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중의 보건이나 안전을 위한다면 부검은 필요한 경우에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부검이 필요한 주검인데도 부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부검이 필요 없는 주검을 구태여 부검하기도 한다. 적어도 부검 시행 여부는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직종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3. 부검에 대한 거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부검을 꺼리는 것이다. 사랑하던 가족의 주검에 칼을 덴다는 사실이 반가울 리 없다. 실제로 조선 시대에는 참시(斬屍)의 형이 있었다. 그러나 부검은 변사자나 그 가족을 처벌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나 살아 있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일이다.

부검 거부는 당연한 감정이겠으나 근거 없는 고집이나 투쟁의 방법으로 부검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가족들도 더 크게, 더 넓게, 더 길게 생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4. 법의학에 대한 전문성 결여

법의학의 대상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의학 지식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법의학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법의학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보다 많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과목이 알려지지 않았고, 의사는 거의 모든 과목의 진료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산부인과가 아닌 피부과를 가는 일은 없다. 부검은 어떨까?

5. 법의학 전문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 법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적다. 아직 법의학은 전문의 과목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 인력을 키우지 못하는 사회도 책임은 있다. 필요하면 일회용으로 써 먹고 말려는 '이용

자'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리는 '다수'의 횡포도 법의학 전문인이 자라는 데 방해 요소이다.

6. 불신

우리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신은 부검과 관련된 법의학 조사에서도 큰 장애물이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미리 판단하고 그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 믿지 않는다. 오히려 부검의사를 비난한다.

부검은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부검이 사망 사건 조사의 전부일 수 없다. 또 부검 감정이 잘못 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적 주장도 없이, 단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신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다.

결론

변사 사건에서 의문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건에 따라 의문이 크고 작을 뿐이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의학적 조사는 필수적이다. 법의학은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그 사회의 제도나 문화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회의 법의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의학적 조사가 필요하다면 우선 법의학이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학에 대한 관심이나 불신은 모두 해롭다. 법의학은 법의 적용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일 뿐 더도 덜도 아니다.

의문사 사건 사례 발표

(박창수·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 사건)

김선수(변호사)

제1부 각 사건의 경위와 수사결과 및 문제점

각 사건의 경위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수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본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대리하고 있어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고, 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 사건의 경우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추모사업회 등에서 입수하고 정리한 자료를 원용하여 재정리하였다.

1. 박창수 열사 사건

가. 사건의 경위

(1) 사망의 경위

박창수 열사는 1960년 7월 28일 부산 중구 영주동 62에서 출생하여 1979년 2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월부터 1980년 7월까지 (주)진양기계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해 9월부터 1981년 5월까지 영진설비에서 근무한 후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1990년 5월 23일 한진그룹에 인수되어 한진중공업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에 배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박창수 열사는 1987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여 3년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역임하였으며, 1990년 7월에 어용노조의 민주화 기치를 내걸고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출마하여 93%의 압도적 지지로 임기 3년의 위원장에 당선되어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박창수 열사는 1990년 9월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역노동조합총연합(부산노련)의 부의장에 선출되어 민주적 노동운동에 헌신하였다.

박창수 열사는 민주적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민주적인 대기업 노동조합의 대표자들과 대우조선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의한 것과 관련하여 제3차 개입 혐의 등으로 1991년 2월

12일 서울동부경찰서에 구속되어 같은 달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박창수 열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1991년 5월 4일 10:00경 이마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처를 입고 안양시 안양5동 613의 9 소재 안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박창수 열사는 안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91년 5월 6일 04:45경 안양병원 마당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2) 사망후의 경과

박창수 열사의 사체 발견 직후(1991년 5월 6일 06:00부터 07:00까지) 가족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사진을 찍자 경찰은 이를 제지하고 필름을 빼앗아 가버렸다. 또한 유족과 변호사가 검사에게 의사가 와서 검안할 때까지 사체를 그대로 보존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방적으로 사체를 병원마당에서 병원 안으로 옮겨 버렸다. 그리하여 유족과 노조간부들은 정확한 사인의 규명을 요구하면서 병원 복도에 시신을 안치하고 농성에 돌입하였고, 경찰은 병원의 출입을 봉쇄하였다.

박창수 열사의 사망소식을 접한 재야원로, 노동운동 지도자,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안양병원으로 몰려 들었고, 1991년 5월 6일 12:00경 임석순 전노협 부위원장, 백기완씨, 박 열사의 부친, 박 열사의 변호인이던 김형태 변호사, 이상수 및 노무현 의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의 박종환 검사, 안양경찰서장, 병원장 등이 병원 3층 병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첫째 사태를 순리적으로 풀어 나간다, 둘째 병원에서 경찰을 철수시킨다, 셋째 시신은 병원 영안실로 옮기고 자유로운 분향을 실시한다, 넷째 사체에 대한 CT촬영, 부검등은 이후 양측이 합의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병원으로부터 경찰이 철수하고 유족등은 박 열사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고 분향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박 열사의 사망사실을 접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조회의,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 전국노동단체연합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 5개의 노동운동단체와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은 "고 박창수 위원장 육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 앞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사인의 규명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1991년 5월 7일 05:00경부터 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영안실을 지키고 있던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을 강제해산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3:30경에는 영안실의 뒷벽을 망치로 부수고 죄루탄을 쏘면서 영안실에 난입하여 박 열사의 시신을 탈취한 후 유족과 합의 후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같은 날 14:30경 수원지방검찰청 박종환 검사의 지휘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재관, 강신옹 박사팀이 박 열사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처사에 직면한 유족 및 노동운동단체 등은 1991년 5월 8일 "고 박창수 위원장 사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사인규명작업에 들어갔다. 위 진상조사단은 자체조사활동을 벌여 1991년 5월 10일 박 열사의 사망에 안기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고 보도하였다. 그러자 수원지방검찰청은 1991년 5월 10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박 열사가 구치소 생활에 대한 염증과 노조활동에 회의를 느껴서, 교도관이 조는 사이에 옥상으로 올라가 순간적 충동으로 투신자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진상조사단은 독자적으로 사인규명활동을 전개하였고, 나름대로 조사과정을 거쳐 박 열사의 사망에 안기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밝혀내고 이를 보도하였다. 그러자 수원지방검찰청은 1991년 6월 1일 다시 '박창수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기부의 홍상태가 박 열사와 알고 있었고 사망 전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박 열사의 사망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취지로 발표를 하였다. 위 발표 이후 검찰은 더 이상 박 열사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척시키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1) 1991년 5월 10일 발표한 수사결과

(가) 사망사건 개요

0. 91. 5. 4. 10:10경 서울구치소에서 박창수는 구치소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전두골부(이마)에 약 6Cm의 심부열창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1:20경 안양시 안양5동 소재 안양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 5. 6. 04:40경 위 병원 6층 옥상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나) 서울구치소내 상해경위

0. 91. 5. 4. 09:45-10:10경까지 서울구치소 14층동 수용자 69명은 약 70평 규모의 제5운동장에서 공놀이, 달리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하였고 사방으로 이동하던 중, 박창수는 맨 뒤쪽에서 걸어가다 갑자기 운동장 가운데 사방벽 모서리를 향하여 약 7-8m를 질주, 높이 145Cm 부위 모서리에 이마 충격.

(다) 안양병원에서의 사망경위

0. 91. 5. 4.

10:10-10:30경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응급치료

10:30-11:20경 교도관 4명이 구치소 앰뷸런스를 이용해 박창수를 안양병원 응급실로 후송

12:00경 동 병원 신경외과 과장 이충선이 C.T 촬영등의 검사 실시

13:30경 전두부열창에 대한 봉합수술 실시

5:30경 수술종료 직후 의사 이충선이 "왜 그랬느냐" 물음에 "공놀이 하다 다쳤다"며 박창수 답변

15:40경 박창수 중환자실로 이동

22:00경 박창수의 부모와 처 박기선이 중환자실 입원 박창수 면회, 이후 처 박기선은 사망시까지 계속 간호

0. 91. 5. 5.

11:00-22:30경 박창수의 부모, 동생 황인갑, 한국중공업 노조사무국장 장세군 및 노조위원장 직무 대행 이정호와 20대-30대 성명불상 청년 3-4명이 면회

0. 91. 5. 6.

01:40경 박창수는 용변후 위 황인갑과 함께 중환자실에 돌아옴

04:10경 대학생등 20대 성명불상자가 박창수 면회

04:30경 박창수는 침상에서 3회 정도 일어나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무언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두 리번거리다가 왼손에 링겔병을 들고 중환자실로 나감

04:40경 동 병원 6층 옥상에서 박창수는 "우-와-아-아-" 하는 소리를 지르고 약 2-3분 뒤 "퍽" 소리를 내며 병원건물 공간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

(라) 시체 부검 결과

0. 변사자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하여 91. 5.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원지검 강력부 김종빈 부장검사와 박종환 검사의 지휘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 의사 서재관, 강신봉 집도로 같은 날 14:10-15:30경 동 변사체에 대한 부검 실시.

0. 부검결과 외표소견으로 양쪽 족관절 부위에 복합골절이 있고, 좌측 수부·우측하퇴부·족부·좌측둔부 외측에 각 피하출혈이 있고, 내부소견으로는 좌골부위에 복합골절이 있고 흉부 및 요추골절이 있으며 우측폐와 비장·간에 파열이 있으며, 직접사인은 심폐파열 및 양폐실질내출혈임.

* 본 해부 소견중 양쪽족관절 부위의 골절은 거의 같은 정도의 충격을 받아 생긴 것으로 보여 변사자는 추락시 몸의 균형을 이루었고, 이는 추락할 때 점프형태(입위 자세)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됨.

(마) 결론

0. 박창수가 피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0. 교도소내 상해경위, 사망직전 중환자실에서 초조해 한 행적 및 부검소견을 종합하면 정확한 자살동기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박창수는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대해 회를 가졌으며 수술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순간적인 충동심에서 91. 5. 6. 04:40경 병원 옥상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판단됨.

(2) 1991. 6. 1. 발표한 수사결과

(가) 안기부 대공정보요원 홍상태 관련 부분

0. 박창수를 알게 된 경위

1990. 5. 하순경 한진중공업내 사노맹 관련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어 그 배후세력으로 백두회등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내사하기 위하여 당시 한진중공업내에서 비교적 온건노선을 걷고 있던 노조감사 박창수를 접촉하면서 알게 된 것임.

0. 장세군, 이정호 등 노조간부를 알게 된 경위

- 장세군은 1990. 12. 하순경 박창수와 장세군이 음주후 교통경찰과 시비한 문제로 부산 남포동 파출소에 연행되어 있을 때 그들의 부탁으로 신병보증을 해주어 알게 되었음.

- 이정호는 1991. 4. 하순경 장세군과 함께 광안리 횟집에서 박창수 석방 선처를 부탁하여 알게

되었음.

0. 홍상태가 안양병원에 전화를 하게 된 경위

- 5. 5. 18:00경 안양병원에 있던 장세군은 홍상태에게 박창수의 부탁으로 박창수의 입원사실과 구치소에 재수감되지 않고 병원에 계속 남아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음.
- 5. 5. 19:00경 장세군은 2차로 홍상태에게 전화를 걸어 박창수에게 직접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
- 5. 5. 19:05경 홍상태는 박창수와 직접 통화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안양병원으로 전화하였으나 교도관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한 거부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음.
- 5. 5. 19:30경 홍상태는 안양병원으로 다시 전화하여 교도관에게 규정을 모르고 전화한 것에 대한 사과전화를 한 바 있음.

0. 홍상태가 안양병원으로 가게 된 경위

- 91. 5. 6. 05:30경 장세군으로부터 사망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박창수가 갑자기 사망하자 평소의 정리상 문상 겸 그 경위를 알아보려고 동일 11:15경 열차편으로 부산을 출발, 16:00경 안양병원에 도착한 뒤 장세군으로부터 회사측과 연락을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으나

- 현지 사정상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하고 5. 7. 09:00경 안양을 출발, 동일 18:00경 부산으로 돌아갔으며 장세군의 기타 알고 있는 다른 노조간부를 만난 사실 없음.

(나) 장세군에 대한 아파트 분양 부분

0. 88. 2. 6. 장세군 명의로 주택청약예금 520만원 가입하여 90. 4. 21. 미광마린타워 72평형을 분양신청하였는데 당첨되어 90. 4. 30. 계약함. 당시 장세군은 평노조원이었고 사무국장은 90. 9. 5. 자로 되었음.

0. 계약금 27,490,000원과 1차 중도금 13,722,684원은 장세군의 자금으로, 2차 중도금 13,740,000원은 처형 김영숙의 자금으로, 3차 중도금 14,555,365원은 역시 처형 김영희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자금출처는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음.

(다) 수사지연 사유

0. 지금까지의 수사내용 및 박창수에 대한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면 박창수는 자살한 것으로 보임.

0. 자살동기 부분에 대하여는 박창수 사망시까지 간호를 담당한 처 박기선, 동생 황인갑 및 박창수와 함께 노조활동을 같이 한 이정호, 박성호등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사에 진전이 없는 바, 당청은 유가족등이 사인규명을 요구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동인들이 하루빨리 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임.

다. 검찰 수사결과의 의문점

(1) 서울구치소에서의 부상 경위에 대하여

(가) 부상경위에 대한 혼선

박 열사의 사망 직후 서울구치소측은 박 열사가 서울구치소내에서 운동시간중 배구를 하다가 가볍게 머리가 찢겨졌다고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박 열사가 5월 4일 배구시합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검찰은 1차로 “혼자서 공놀이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였다가 5월 1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91. 5. 4. 09:45-10:10경까지 서울구치소 14중동 수용자 69명은 약 70평 규모의 제5운동장에서 공놀이, 달리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하였고 사방으로 이동하던 중, 박창수는 맨 뒤쪽에서 걸어가다 갑자기 운동장 가운데 사방벽 모서리를 향하여 약 7-8m를 질주, 높이 145cm 부위 모서리에 이마충격”하였다고 최종적인 입장문을 정리하였다. 한편 검찰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준비서면에서 “박창수는 5. 4. 10:10경 서울구치소 제5운동장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공놀이 및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운동장 주위 사방벽 모서리를 향하여 약 7-8m가량 뛰어가서 높이 145cm의 벽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쳤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구치소에서의 박 열사의 부상경위에 관한 발표 내용이 부처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나) 의도적인 자해행위인가 여부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다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자해행위로 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즉 반정부투쟁의 일환으로 자해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밝힌 대로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대해 회의를 가져서” 자살할 목적으로 자해를 하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 이후의 진행상황처럼 부상 이후의 민간병원으로의 이송을 겨냥하여 단순자해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당시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였다는 것인지, 공놀이를 하였다고 하면 공놀이중에 실수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놀이와는 상관없이 자해했다는 것인지, 또한 자해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은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대해 회의를 가져” 마치 자살할 목적으로 교도소내에서 자해를 하였으나 수술 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박 열사의 부상당시 같이 운동장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부상경위를 조사하였다. 검찰의 수사자료를 보면 박 열사가 당시 공놀이 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공놀이를 하면서 공을 잡으러 가다가 다쳤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자해를 했는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분명한 경위규명을 하지 않았다.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소자 이원철과 이홍규는 공놀이를 하는 것은 보았으나 부상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해, 재소자 서근철과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 김순구, 유승길 등은 박 열사가 당일 공놀이를 하

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유승길은 보다 구체적으로 “박창수는 부상 당일 자신과 함께 달리기를 하다가 자신은 다른 재소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후로 박창수가 어떤 운동을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김순구는 “부상 당일 박창수가 어떤 다른 재소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이전에는 운동장을 서너바퀴 뛰어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순구, 유승길뿐만 아니라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었던 이명훈, 최상락 등의 진술에 따르면 “박창수는 평소 운동시간에 주로 걷기 또는 달리기를 하였으며 박창수가 짐풀놀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였다는 진술을 한 이원철과 이홍규의 경우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상 이전에 박 열사가 누군 지도 몰랐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박 열사는 부상 당일 공놀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이원철과 이홍규는 부상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다쳤는지 자해를 했는지는 이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조사한 사람들중 당일 부상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재소자 고재성과 서근철인 바, 이들은 사망 당일인 5월 6일 조사를 받은 이후 서근철이 5월 29에, 고재성이 5월 30일에 추가조사를 받았다. 이들의 진술은 대략 일치하는데, 특히 당시 부상장면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고재성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 운동시간을 알리는 핸드폰 사이렌소리가 나서 모두 입방하려 들어가는 상황(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공놀이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자신과 한방에 있는 김정성이라는 형뻘 되는 사람이 철봉 쪽을 향하여 천천히 뛰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조금이라도 그곳에 있다가 들어갈 생각으로 당시 입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재소자들의 맨뒷쪽에서 이들과는 반대로 서 있었는데 자신의 앞쪽에 있는 박창수가 급하게 벽쪽으로 뛰어가더니 벽면 모서리부분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 뒤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고재성은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가 다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당시 박창수가 만약 공을 가지고 그것을 받을려고 뛰어가는 상황이라면 위쪽을 쳐다보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턱부분이 다쳤을 것인데 그 당시 박창수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마 부위로 벽면 모서리를 들이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박창수가 의도적으로 자해할 마음이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사자료에 비추어 보면 박 열사는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다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든 시간에 자해할 생각으로 일부러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자해행위의 동기

서울구치소에서 부상당한 것을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수사기록 어디에서도 박 열사가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회의를 가졌다”거나 자살할 조짐이나 짐새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구속된 후의 박 열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접견 표와 박 열사와 같은 방(14동중 5방)에서 생활하였던 재소자들의 진술이다.

먼저 접견표를 살펴보면, 박 열사는 면회온 조합간부 등 지인들에게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2월 25일), “지내기에 좋습니다. 이 기회에 공부하고 나가렵니다”(3월 4일), “밖에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겠어요. 이 시기에 밖에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안에 시설이 잘돼 있어서 지낼만해요”(3월 19일), “마음 같아서는 빨리 나가서 회사와 실질적인 대화를 좀 해서 정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까 하는데 법이 또 그렇습니까”(4월 3일), “조합에서 내 걱정하느라고 일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내 걱정 말고 일이나 신경쓰시라고 해요”(4월 16일), “책좀 넣어줘요. 소설책도 좋구요”(4월 18일), “조합원들과 간부들에게 인삿말 좀 전해줘---조합원들의 활동은 어때?”(4월 26일) 등등 노조운동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고 볼 만한 징후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접견표에 따르면, “면회을 때 화, 목은 조합원과 면회하고 나머지는 가족과 면회 좀 했으면 합니다.--- 저도 가족과 면회를 못해서 가족안부가 궁금합니다”(3월 5일), “(모에게) 오셨어요. 여기 있으니까 가족밖에 생사이 안 나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는데 가족이 안 와서요”(3월 6일), “(모에게) 신문이나 T.V에서도 모두 나왔으니까 애들이 걱정이예요. 애들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래요. 당분간은 유치원에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왜 집사람은 면회를 안 와요. 지금 여기에 온지 1달이 넘었는데도 안 와요”(3월 11일), “(부인에게) 면회를 못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걱정도 많지만 네 걱정 때문에 내가 맘이 편치 못하다”(3월 13일), “(부인에게) 왜 그렇게 편지를 슬프게 썼노. 당분간 면회를 자주 왔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약주 많이 하셔도 네가 이해 좀 해라.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너 건강이야. 요근래에 웬지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안 정이 안 돼. 하여튼 당분간 성남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2번정도 와주라”(3월 16일), “(모에게) 저는 부산에 혼자 못있어예.---- 집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 혼자 있으면 더 안먹는다니까요”(3월 18일), “신형, 오늘 내려가시면 집에 전화해서 잘 있더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집사람이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모양입니다”(3월 19일), “(부인에게) 약좀 지어서 먹거라. 애는 잘 있나. --- 병원에도 좀 가봐라. 네가 나 때문에 신경써서 그런 것 다 안다”(3월 20일), “(처보고 이사를 하라고 그랬나라는 어머니의 질문에 대해) 예, 처가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3월 27일), “(지인들에게) 들어왔으니까 애도 걱정되고 집사람이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해서 소용없지만 제일 걱정되는게 생계문제지”(3월 29일), “(모에게) 처가 요번에 면회 와서 막 울더라구요. (모가 “울긴 왜울어. 친정가서 있으면서”라고 하니까) 자기도 속이 상하겠지요. 제가 친정가라고 그랬어요”(4월 1일), “(남에게 자주 우리 이야기하지 말아요라는 부인의 말에) 어째 안할 수가 있나, 걱정이 되는데. 왜 이리 철딱서니가 없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런단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으니 그러지. (그럼 요앞에 와서 방 열어놓고 살까?) 성남에 와서 살란 말이다. (어쨌건 내 걱정은 말고 부모들이나 남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네가 걱정이 되고 또 시어머니하고 왜 그리 안 통하나?”(4월 6일), “(부인에게) 임대주택 관계는 일단 유보하자. 성남에 와 있으면 어때냐? 접견오기도 쉽고. 지난 주는 접견이 한 번도 없어서 그렇더라. (어머니하고 나와의 문제는 둘의 문제이니까 자기는 중간에 끼어들 필요없어요) 내 입장에서 참 힘들다”(4월 29일), “(부인에게) 약간 당분간 자주 와주면 좋겠어. 당신이 힘든 것 알지만. (당신은 아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왜 안하겠어. 조금만 더 신경써 주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5월 2일), “(부인에게) 찬이 엄마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 --- 그래그래 알았다. 당신과 아이들이 잘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고통을 감수해야지”(5월 3일) 등등, 박 열사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부인 등 가족

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상 전날인 5월 3일 부인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 열사는 가족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였으나 가족을 버리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도리어 부상 전날인 5월 3일 “당신과 아이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고통을 감수해야지”라고 한 다음 자해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박 열사는 자살을 시도했다기 보다는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일단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 8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들은 “박창수가 평소에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던가요”, “박창수가 투신자살했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럴 조짐이 있지는 않았는가요” 등의 수사관의 질문에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다”, “박창수가 평소에 말이 없고 내성적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자살할 정도로 심적 부담 및 어려움은 없었다고 본다”, “평소 대화는 없었고 내성적이었지만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적극적이었으며 동료들과의 생활도 원만한 것으로 보여 자살한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박창수가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회사의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한 적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 “그가 투신자살하였다는 것은 평소 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뜻밖의 일로 여겨진다. 평소에 그럴 만한 느낌을 받지 못했고 밥도 잘먹고 저녁 오락시간에 박창수가 윽놀이를 하자고 예를 쓸 정도였고 수감생활도 다른 재소자보다 충실히 하여 그가 왜 자살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박창수가 자살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그럼 짐새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의 성격은 상당히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책을 많이 들여다보곤 하였다. 그런 박창수가 자살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등등, 그 어느 누구도 박 열사가 자살할 짐새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박 열사와 나란히 잠자리를 하였던(재소자 조영석 진술) 재소자 염병기의 진술에 따르면, 접견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아들이 목이 붓는 병에 걸려서 안타깝다든지 자기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중이니 처와 아들이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할 지 부모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을 하고 자기 직장의 임금교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는” 등 가정문제와 노조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정도이다.

다른 한편 박 열사는 안양병원 이송후 부상경위와 관련하여 안양병원 의사 이충선등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놀이를 하면서 공을 쫓아가다가 벽에 부딪혔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이정호씨에게는 “구치소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말을 하면서 말꼬리를 흐렸다고 하여 무언가 다른 경위가 있음을 내비추었다. 이에 대해 이정호씨는 진술 당시(1991년 7월 25일)에도 “지금도 석연치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시국사건으로 수감중이었던 대학생 박정규와 이성우는 박 열사가 머리를 부딪힐 당시 “노태우 정권타도”라는 구호소리가 운동장 앞에 있는 14동 6방에서 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부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박 열사가 구호를 외쳤다고 진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상과 같은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구치소내에서의 이마 부상경위를 살펴보면,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 실수로 다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으나,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대해 회의를 가져” 마치 자살할 목적으로 자해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전혀 없다.

(2) 검찰이 주장하는 자살 동기에 대하여

(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박 열사가 수술 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순간적인 충동심으로 투신자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박 열사가 자살할 목적으로 구치소내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자살할려고 하였으나 수술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재차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열사가 자살할 목적으로 구치소내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불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나) 검찰이 조사한 참고인들에 따르면, 그 어느 누구도 박 열사가 안양병원 이송후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도리어 박 열사는 안양병원 이송후 재차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5월 5일 14시경부터 5월 6일 01:00경까지 안양병원에 있었던 장세군을 통해 홍상태라는 부산지역 안기부 요원과의 전화통화 등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장세군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5월 5일 17시경 중환자실에서 박창수에게 ‘그다지 큰 상처가 아니면 구치소내의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교도관의 말을 전해주자 박창수 말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교도소내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잠시후 박창수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제가 링게르병을 들고 화장실을 따라갔고 교도관이 저희들을 따라왔으며 화장실에서 박창수가 담배를 한대 피우고 싶다하여 처음에는 교도관들이 난색을 표하였으나 양해를 해주었고 박창수는 저에게 교도관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홍이야기는 잘되나 하면서 홍한테 추진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18:00시경 병원 1층 응급실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홍상태에게 전화를 하니 홍상태는 자초지종을 설명듣고난 다음 오늘은 휴일이니 연락하기가 어려워 내일 일찍 알아보고 10시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다. 저는 전화를 마친 다음 중환자실로 올라가 계속 간호를 하고 있던 박기선과 박창수에게 홍상태가 내일 10시까지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내용을 알려주고 옆에 있던 이정호(노조 직무대행)에게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계속 추진해보겠다고 하니 이정호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19:00경 박창수가 화장실을 가자고 하여 링게르병을 들고 따라가니 박창수가 괴로운 표정을 다시 지으며 담배 한대를 피면서 ‘홍하고 내가 직접 통화할 수 있겠나’라고 물어보기에 제가 걸어주겠다고 하여 중환자실 옆 공중전화로 다시 홍상태에게 전화를 걸어 박위원장이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니 홍상태가 전화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 수화기를 박창수에게 바꾸어주려고 하니 옆에 있던 교도관이 안된다고 하면서 제지하였고 이에 제가 홍상태에게 안된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홍상태는 그러면 교도관을 바꾸어달라고 하여 제가 그 수화기를 교도관에게 바꾸어주니 교도관은 전화를 바꾸어줄 수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난 5분뒤 제가 맨 처음 전화하였을 때 안양병원 전화를 가르쳐준 바 있는데 홍상태는 그 전화번호로 안양병원 중환자실에 전화를 걸었고 제가 들어보니 교도관과 홍상태가 바꾸어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싸우는 통화를 하였고 잠시후 교도관이

박창수의 아버지에게 그 전화를 바꾸어주자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약 30분 뒤 홍상태가 다시 중환자실로 전화를 하여 교도관과 사과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전화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사과내용의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들었다.”

장세군의 진술과 검찰의 6월 1일자 수사결과 발표 및 이정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박 열사가 구치소에서 자살을 목적으로 자해를 하고 나서 그 수술결과가 비교적 경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는커녕 안기부의 힘을 빌어 구치소에 재수감되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 열사가 구치소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은 자살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구치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일단 추측해볼 수 있다.

(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열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순간적인 충동심에서 투신자살하였다”는 근거의 하나로 사망 직전 중환자실에서의 초조해한 행적을 들면서 “91년 5월 6일 04:30경 박창수가 침상에서 3회정도 일어나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무엇인가 망설이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원손에 링게르병을 들고 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박 열사와 함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자신의 부인 강삼순을 간병하기 위하여 5월 5일 저녁 8시경부터 중환자실에 있었던 안종석씨(당시 76세)가 진술한 내용이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박 열사가 사망 직전 중환자실을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위 안종석씨, 중환자실 환자였던 허영자씨,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던 홍문숙 간호원 등 3사람인데, 위 내용은 안종석씨만이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시사저널 잡지의 문정우 기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안종석씨를 만나 인터뷰를 하여 동일한 진술을 들은 바 있는데, 상황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망경위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안종석씨의 진술내용은, 박 열사가 중환자실을 나간 시간이 검찰이 발표한 04:30보다 10분 빠른 04:20일뿐 검찰발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5월 6일 01경부터 한숨을 자고 박창수가 밖으로 나가기 1시간전쯤에 일어나 잠이 오지 않아 처의 침상에 걸어앉아 있는데 04:20경 박창수가 몹시 망설이는 듯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동작을 3번이나 반복하다 침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발표한 사실 자체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 박 열사가 “초조해했다”거나 나아가 “수술 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투신자살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5월 10일자 검찰의 수사발표는 “5월 6일 4시 10분경 대학생등 20대 성명불상자가 박창수를 면회”했다고 발표하여 박 열사가 사망 직전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으나, 이는 검찰이 참고인진술등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참고인진술 등 수사기록 어디를 보아도 그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다만 당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던 오의순 간호원이 “새벽 4시경 쯤 동생이라고 하는 20대 가량의 남자 1명이 들어와 박위원장과 10분 내지 15분 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의순의 위 진술은

당일 중환자실에서 박 열사의 계호근무를 하였던 유영국 교도관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재확인의 필요성이 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5월 6일 새벽 4시경을 전후로 하여 안양병원 중환자실 근처에 있었던 사람은 환자들을 제외하면 중환자실 간호원 홍문숙과 오의순, 당일 계호근무를 하였던 교도관 최형식과 유영국, 그리고 박 열사의 이복동생 황인갑뿐이었다. 그런데 교도관 유영국의 진술에 의하면, “황인갑은 5월 6일 01:30경에 장세군, 이정호를 여관방에 데려다주러 나갔다가 당일 감독교도관이었던 이상희 교감을 만나 술을 한잔 하고 약 02:30경에 들어와 중환자실에 들어가 박창수를 잠깐 보고 나와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약 30분후에 중환자실에 다시 들어가 바로 박창수와 같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으며(시간이 03:20경이었다) 이 때 화장실앞에 가서 확인을 하였는데 박창수와 황인갑은 휴게실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5-6분 지체하였으며 이후 황인갑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의순과 유영국의 진술은 서로 어긋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오의순의 진술을 근거로 박 열사가 무엇인가에 쫓겨 충동적으로 자살한 듯한 인상을 풍긴 검찰의 위 수사발표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3) 투신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소리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

(가) 검찰 수사결과는 박 열사가 투신자살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04:40경 위 병원건물 6층 옥상에서 ‘우-와-’하는 소리를 지르고 2-3분 뒤 ‘퍽’ 소리를 내며 병원건물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검찰의 위 수사결과는 안양병원 525호실에 입원해있던 환자들의 진술에 의거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525호실 환자 김경님, 안향수, 전계자 및 지연실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데(김경님의 진술에 따르면 525호 환자는 5명이었다고 하는데 1인의 진술은 없음), 이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검찰 발표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매일 4시 30분경에 머리가 아파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약을 먹곤 하였는데 그 날도 약을 먹은 후 약 10-20분쯤 지나서인데 남자의 ‘으악!’하는 비명소리가 나더니 땅에 떨어지는 것같은 ‘퍽억!’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리고 창문이 흔들릴 정도 진동이 있어서 방안에서 창문 밖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약 15분 가량 지나서 1층 땅바닥 어린이놀이터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여자가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525호실에는 5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자신이 깨어서 위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는 지연실이만 깨어 있어서 같이 비명소리를 들었고 다른 사람은 비명소리와 떨어진 진동 때문에 모두 잠을 깼다.”(김경님)

“당일 머리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이 들지 않고 있는데 위 시경에 등산가서 고함치는 것 같은 ‘이야’하는 아주 큰 소리가 나더니 바로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끼리 뭐가 떨어졌나보다 하였으며 그후 약 20-30분쯤 후에 1층 땅바닥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떤 여자가 찬희 아빠, 찬희아빠 정신차리세요 하면서 우는 소리 나서 그 때 사람이 떨어졌나보다 생각

하였으며 그후에 제가 화장실에서 내려다보니까 시트만 덮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안향수)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새벽 4시 40분경 갑자기 병원옥상에서 사람이 괴롭고 답답할 때 지르는 '아--아--아--'하는 긴 외침소리가 들려오므로 저는 앞침대에 있는 전계자 할머니에게 '아이구 환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면 이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 저런 소리를 지를까? 환자가 목소리도 크다'라고 하자 전계자 할머니도 '그러게 말이야'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저는 '나도 목이 성할 때는 가끔 산에 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기분이 좋아지던데---'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퍽'하면서 흡사 쌀가마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 아 하는 외침소리가 난 후 약 3분 후에 퍽하는 소리가 난 것 같다."(지연실)

"저도 그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 신문기자가 어찌어찌 알고 찾아왔기에 방금 지연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대답해 주었는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 비명소리라고 기사가 났던데 그 기사는 엉터리이다. 등산을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고함치듯이 '아---'한 뒤 2-3분쯤 지나 퍽하는 소리가 났던 것이다. 절대로 사람이 떨어지면서 내는 비명소리가 아니었다.---- 퍽 소리가 난 후 10분정도 지나 '여보 정신차려요', '찬이아빠 이러면 안되요'라며 울먹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때서야 고함치던 사람이 땅바닥에 투신자살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전계자)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검찰의 발표내용이 이들의 진술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고함을 지르고 곧바로 퍽 소리가 났는지 2-3분 후에 퍽 소리가 났는지에 대해 525호 환자들 내에서도 진술에 차이가 있는데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2-3분 후에 소리가 난 것으로 보인다.

(다) 검찰은 525호 환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박창수씨가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나, 이러한 결론에는 많은 취약점이 있다. 박 열사가 옥상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난 '퍽'소리를 5층 환자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땅바닥에서 가까운 1층이나 2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다 큰 소리로 듣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것도 1층에 떨어지는 소리를 5층 사람이 들으면서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거나 '흡사 쌀가마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로 들었다면 1, 2층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진동과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안양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의 건물로서 5층이 가장 높은 층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1, 2층 사람 중에 그러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전혀 없다. 사망당일 1층 정문앞 층층대 바로 밑에서 안양병원 경비인 오순용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순용씨는 "당시가 고요한 밤인데 변사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못들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당시에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다면 그곳으로 즉시 갔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오순용씨는 "당시에 졸거나 자리를 잠시 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계호교도관 최형식씨 또한 박 열사가 사라진 것을 알고 찾는 과정에서 "1층으로 내려와 정문안 층층대 바로 밑에 있는 수위에게 환자 한 사람 나가는 것을 못보았느냐고 하였드니 못보았다고 하기에 혹시 졸았는가 생각했다가 마침 책상위에 라면이 있어서 졸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망당일 2층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였던 오의순 간호원도 "혹시 그시경 비명소리같은 것을 못들었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전혀 듣지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당일 근무를 하였던 최형식, 유영국 교도관, 홍문숙 간호원 등 의 경우도 수사관들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박 열사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듣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라) 수사기록에 의하면 525호실 환자를 제외하고 앞에서 언급한 안종석씨와 5월 5일 22시부터 5월 6일 07:30까지 3층 복도 간호사실(박 열사가 있었던 중환자실은 2층)에서 근무를 하였던 강영신 간호원이 525호 환자들과는 다른 시간에 다른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안종석씨는 "박 창수가 4시 20분경에 밖으로 나간 후 곧 중환자실옆 테레비가 있는 휴게실(산부인과 휴게실)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쿵, 아악!'하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다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와---"라고 진술하였으며, 강영신 간호원은 "5월 6일 04:30쯤 산부인과 병실쪽에서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물건이 1층 어린이 놀이터바닥 콘크리트에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들은 소리는 몇가지 점에서 525호 환자들이 들은 소리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525호 환자들의 경우 "등산을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고함치는 듯한" '아--아--아' 소리(전계자씨는 '비명소리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할 정도임) 후에 '퍽'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안종석씨는 '쿵' 소리 다음에 비명소리인 '아악!'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강영신 간호원은 둔탁한 '퍽'하는 소리가 아닌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강영신 간호원의 경우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물건이 1층 어린이 놀이터바닥 콘크리트에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소리방향이 2층에 있던 산부인과 병실 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안종석씨가 '쿵, 아악!' 소리를 들은 곳이 산부인과 병실앞 휴게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525호실 환자들이 들은 소리와는 다른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종석씨와 강영신 간호원이 525호 환자들이 들었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면 그 진동이나 크기가 훨씬 더 했을텐데 이들의 진술속에서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없으며, 만약 이들이 들은 소리가 525호 환자들이 들은 소리와 똑같다면 경비와 간호원, 교도관 등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던 시간대도 525호 환자들과 약 10분간의 차이가 있다.

(마) 검찰이 525호 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박창수씨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이러한 불가사의한 상황을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525호 환자들이 들었던 소리는 박창수씨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발생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박창수씨를 다른 데서 죽인 후 투신자살로 죽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가 소리를 지른 다음 어떤 물체를 이용하여 옥상 밀바닥을 친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4) 부검 결과에 대하여

(가) 검찰은 박 열사가 투신자살하였다는 근거로 1991년 5월 7일에 있었던 부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검찰이 가족들의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제부검을 실시한 것의 의문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991년 5월 7일 13:30경 박 열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안양병원 영안실의 뒷벽을 망치로 부수고 최루탄을 쏘면서 영안실에 난입하여 박 열사의 시신을 탈취한 후 유족과 합의후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같은 날 14:30경 수원지방검찰청 박종환 검사의 지휘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재관, 강신웅 박사팀이 박 열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유족이나 노동단체들이 사인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자들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부검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관련자들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실시하였어야만 할 것이다.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부검의 실시는 의혹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검찰이 발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외표소견으로 양쪽 족관절 부위에 복합골절이 있고, 좌측 수부, 우측 하퇴부, 족부, 좌측둔부 외측에 각 피하출혈이 있고, 내부소견으로는 좌골부위에 복합골절이 있고 흉부 및 요추골절이 있으며 우측폐와 비장, 간에 파열이 있으며, 직접사인은 심폐파열 및 실질내출혈”이라고 하면서 “본 해부 소견중 양쪽족관절부위의 골절은 거의 같은 정도의 충격을 받아 생긴 것으로 변사자는 추락시 몸의 균형을 이루었고, 이는 추락할 때 점프형태(입위자세)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검의들은 부검감정서에서 “본 시체의 경우 외표에서는 전반적으로 경미한 손상이 관찰될 뿐이나 흉복강내 장기 및 골격계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등 손상의 형태는 추락에 합당한 소견”이라면서 “양족부의 분쇄압박 골절 및 골반골의 분쇄골절상태로 보아 추락시 추락면에 의하여 양족부가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입위추락으로 판단되며 전도시 둔부가 이차적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박 열사가 투신자살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부검결과와 검찰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추락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박 열사는 5월 6일 04:30경 중환자실을 나가 04:40경에 6층 옥상에서 “우-와-와-와”하는 소리를 지르고 약 2-3분뒤 “퍽”소리를 내며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박 열사는 슬리퍼를 신고서 한팔에 링게르주사를 꽂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링게르 병을 든 채 2층 중환자실에서 계단을 통해(경비 오순용의 진술에 따르면 병원 엘리베이터는 06시이후 21시까지 운행되었음) 6층 옥상에 10여분내에 올라갔다. 그리고 1층 놀이터운동장에서의 발견 당시 모습을 감안할 때 박 열사는 중환자실에서 나온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한팔에는 링게르 주사를 꽂고 다른 한손으로는 링게르병을 든 채 6층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내렸는데 양쪽족관절의 상태로 보아 조금도 경사짐이 없이 똑바로 두발을 내딛으면서 링게르가 꽂혀있는 팔을 든 채로(팔은 부려지지 않았음) 둔부로 주저앉았으며 그러면서 사뿐히 머리 뒷부분과 손을 시멘트바닥에 내려놓았다. (머리는 깨어지지 않았으며, 부검팀도 두개골 골절 등 두부손상은 사망 당시에 발생한 손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박 열사를 부검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도 이에 대한 의문을 의식해서인지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란을 통해 추락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위추락이 31%에 해당된다는, 일본인 학자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위

추락한 이후에 박 열사와 같은 시신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검찰도 밝힌 바와 같이 “위 병원 옥상구조는 옥상사방 벽두리에 약 70센티미터 높이의 난간을 벽돌로 쌓아 시멘트로 미장되어 있으며” 그 폭도 매우 좁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감안한다면 슬리퍼를 신고 한 팔에는 링게르주사를 꽂고 다른 한손에는 링게르병을 든 박 열사가 난간을 뛰어넘어 똑바로 떨어진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힘들다. 그리고 검찰 발표처럼 박 열사가 순간적인 충동심으로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면 왜 슬리퍼를 신고 한팔에는 링게르주사를 꽂고 다른 한손에는 링게르병을 든 채, 조심스럽게 난간에 올라가, 그것도 ‘우-와-와-’ 소리를 지르며 똑바로 떨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박 열사가 양발로 시멘트바닥에 떨어졌을 경우 525호 환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생기거나 ‘흡사 쌀가마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같은 소리’가 발생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시신 발견 당시 6층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경미한 손상이 관찰될 뿐”인 상태에서 유족 등과의 합의도 무시한 채 영안실에 경찰을 투입하여 시신을 빼앗아 강제로 부검한 뒤 “흉복강내 장기 및 골격계가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등 손상의 형태는 추락에 합당하다”는 내용의 검찰 발표는 그 자체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아니할 수 없다.

(5) 안기부의 개입의혹에 대하여

(가) 안기부 요원 홍상태가 박 열사와 장세군 등 한진중공업노동조합 간부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박 열사가 안양병원에 입원중일 때에 병원으로 몇 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최소한 사망 다음날 안양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나) 검찰은 5월 10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는 안기부 관련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진상조사단에서 안기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장세군, 홍상태 등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6월 1일에 이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그 발표내용의 요지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검찰의 발표는 전적으로 홍상태와 장세군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고, 홍상태가 안양병원에 전화를 걸어 박 열사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교도관의 거부로 통화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진술도 일치한다.

(다) 박 열사는 1990년 10월초경 장세군을 통하여 홍상태를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홍상태가 박 열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우겨 할 수 없이 홍상태를 박 열사의 집까지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홍상태는 전세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6만원짜리 단칸방에서 가족 네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는 박 열사에게 “노조위원장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박 열사가 구속된 이후 홍상태는 1991년 4월 25일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카페에서 장세군과 노조 조직부장 한재문을 만나 전노협 탈퇴와 해고자 복직을 맞바꾸자고 제안하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장세군, 한재문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또 같은 달 말경에는 장세군의 주

선으로 홍상태와 노조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호가 부산 남구 민락동 소재 횟집에서 만난 자리에서 홍상태는 “박위원장 문제는 해고되지 않을 정도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약문제도 최대한 신경을 써보겠다. 주위에서 볼 때 노조가 변한 것처럼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전노협을 탈퇴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회유를 하였다. 홍상태가 4월 말경 장세군, 이정호를 만난 사실은 검찰 수사결과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안기부가 주도하여 한진중공업노조를 전노협으로부터 탈퇴시키기 위하여 공작이 전개한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노조 회계감사인 김주수에 의하면 1991년 5월 6일 19:00경 안양병원옆 공중전화박스 앞에서 홍상태를 만났는데 홍상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장국장과 약속했는데 급히 만날 수 없겠느냐”고 물으면서 마치 장세군을 자신의 부하처럼 불렀는데, 홍상태는 176센티미터 정도의 키에 금테안경을 쓴 40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홍상태는 장세군 이외에 노조간부를 만난 바 없다고 하여 김주수의 진술과 상치하고 있다.

한편 홍상태나 아니면 안기부 직원이 5월 5일 저녁에 안양병원에서 박 열사를 만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은 없고 또한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된 바도 없다.

(라) 한편 박 열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박 열사가 있던 감방에는 인신매매범이라는 자가 같이 있었는데, 이 자는 박 열사에게 잔인한 인신매매의 수법을 들려주면서 “전노협, 연대회의를 탈퇴하지 않으면 당신 마누라를 납치하겠다”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박 열사를 협박하였으며, 박 열사는 처(박기선)와 면회할 때 “누가 와도 문 열어주면 끝장이니 문 열어 주지마라. 용찬이 유치원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 성남 시댁에 가 있으라”고 말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후 처에게 인신매매범이 같은 감방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박 열사가 부상당할 당시에 같은 사방에 있던 재소자들은 모두 조사하였으나, 박 열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 모두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진상조사단측에서는 박 열사가 수감될 당시에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 명단과 특히 인신매매와 관련한 재소자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서울구치소측에 요청하였으나 그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 결국 안기부가 한진중공업노조에 대해 무언가 공작을 진행했음을 분명한 것 같다. 특히 홍상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노협 탈퇴를 주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자명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안기부의 공작과 박 열사의 사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

2. 이내창 열사 사건

가. 사건 경위

이내창 열사는 1962년 서울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서울의 청구국민학교, 대경중학교,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군대를 제대하고 1986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에 입학하였다. 1987년 만화판화페 동아리 “새길”的 회장, 1988년 조소학과 학생회장을 맡았고, 1988년 11월에 실시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생회장선거에서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1989년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열사는 1989년 8월 열의를 가지고 2학기 총학생회 사업을 준비하였다. 8월 10일 평소 친분이 있는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4학년 김정환씨의 방문을 받고 그가 보안사에서 당한 고문과 생매장 위협 및 프락치 강요에 대해 의논하였다(김정환씨는 보안사에 끌려가 프락치를 강요받다가 8월 9일 석방되었다). 김정환씨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머물면서 8월 13일 예술대학 학생회에서 보안사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고 14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갔고, 이 열사는 14일 오후에 행적이 묘연해졌다.

14일 10:00-11:00경 학교내의 지리나 상황에 대해 생소한 듯한 신원미상의 남자 1인과 여자 1인이 예술대학 조소학과 실기동에 찾아와 이 열사의 소재를 문의하였고, 12:00-13:00경 이 열사가 내리 소재 “중앙슈퍼”에서 신원미상의 남녀 2인과 함께 음료수를 함께 마셨다. 이후 이 열사는 안성과 학교를 시내버스로 두어차례 오고갔으며, 최종적으로 16:45경 학교안 예술대학 앞에서 안성행 시내버스에 승차한 것이 목격된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이 열사의 15일의 행적은 여수에서 발견되었다. 08:00경 여수에서 거문리행 신영훼리호에 승선하여 12:50경 거문리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동행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13:00-13:30경 사이에 방파제 옆에 이 열사가 앉아 있어서 10여분간 대화를 하였다고 한다. 14:00-15:00경 거문리 선착장으로부터 100여미터 떨어진 중국음식점에서 이 열사가 혼자 볶음밥을 먹은 사실을 음식점 주인이 확인하였다. 15:00경 이 열사가 신원미상의 남녀 각 1인과 함께 거문리 소재 “삼호다방”에 들어왔는데, 신원미상의 남자는 바로 나가고 신원미상의 여자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별 대화 없이 20여분간 있다가 나갔으며 찻값은 여자가 지불한 것이 다방여종업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여자는 키가 작았고 머리가 어깨에 닿았다고 한다. 15:30경 이 열사가 신원미상의 남녀 각 1인과 함께 거문리와 덕촌리를 왕래하는 ‘덕성호’라는 배를 타고 전년 사실이 뱃사공에 의해 확인되었다. 뱃사공에 의하면 이 열사가 위 남녀의 사진을 찍어주었고, 세 명의 뱃삯을 여자가 한꺼번에 지불하였다고 한다.

그 후 덕촌리에서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18:30경 덕촌리 유림해수욕장에서 여행객 신선옥이 방가로에서 나와 이를 닦으러 샤워장으로 가다가 나무 뿌리에 걸린 상태로 물위에 엎드려 있는 이 열사의 시체를 발견하고 동네 청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김성우, 박정홍, 김적선, 지강선 등 4명의 동네 청년들이 이 열사의 시신을 인양하였는데, 사후경적이 없고 배에 물이 차지 않는 등 살아 있는 것 같아 2,3회 정도 가슴을 눌러 인공호흡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발견 당시 사체의 상태는 상의, 안경, 혁대 및 시계가 없고 하의와 양말, 신발은 그대로 착용한 상태이며, 얼굴, 팔, 다리, 가슴에는 외상이 있으나 손에는 전혀 외상이 없었다.

부검 결과 사망시간이 식사시간 1시간 내지 2시간 이후로 나타났으므로, 결국 이 열사의 사망시

간은 16:00 내지 17:00경으로 추측된다.

사체 발견후 15일 20:00경 경찰 1인, 방위병 2인, 사진사 1인(나하나 사진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사체 주위에 20여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22:00경 평소와 달리 보건소장은 의사체 발견 연락을 받고 광주시경 경무계장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시체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다른 의사체 발견시에는 사진사에게 구체적으로 활영부위와 매수를 지정하여 지시하였는데 반하여 당일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 16일 오전부터 동행인이 있으면 나와줄 것을 요청하는 새마을 방송을 거문도에서 실시하였으나 동행인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여객자들에 대한 검문을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사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타살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경찰은 여객자들에 대한 검문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16일 10:00경 유가족이 덕촌리에 도착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다. 16일 16:00경 학생진상조사단이 여수에 도착하고, 17일에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18일 03:00경 여수 전남병원에 시신을 안치하였고, 19일 11:40경부터 13:00경까지 부검을 실시하였다. 부검집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 소속 이정빈(서울대 법의학), 송계용(중앙대 병리학)이 담당하였고, 유가족 1인(큰형), 학교대표 1인, 학생 대표 1인이 참관하였다. 부검결과는 추체뇌 파열, 얼굴·팔·다리의 타박상, 몸통의 찰과상, 머리의 가벼운 경상 등이 나타났다. 국과수 부검의는 의사로 추정하였다.

나. 수사 결과

여수경찰서가 1989년 11월 24일 이 열사의 아버님께 보낸 수사결과 통지에 의하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수사요원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서울, 경기도 안성, 여수 거문도 등지에서 3개월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참고인 81명을 159회 조사하고 거문도 내용객 1,143명에 대한 우편진술서를 발송 415명으로부터 회답을 받고, 공개리에 사체를 부검하여 가검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하고, 6회에 걸쳐 연인원 120명을 동원 사체 발견장소 부근 산속, 해안, 수중 등을 수색하고 5회에 걸쳐 조류에 의한 부유물이동실험을 실시하고, 서울·안성 등지에 16회에 걸쳐 연인원 29명을 48일간 출장 수사케 하고, 목격자 이현우 등과 참고인 도연주 등 6명에 대한 대질조사를 실시하고, 거문도 주민 및 숙박업소, 민박촌 등에 대한 탐문수사” 결과라면서 실족추락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변사체 부검 결과 사체가 수중에 있었다는 외표 소견으로 수부가 표모피를 형성, 둔부가 아파형성, 폐장에서 프랑크톤 검출, 좌우추체네 출혈, 폐포내출혈, 국소적 폐기종, 폐부종상을 정하고, 혈액, 위 내용물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사인은 의사로 판명되고,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난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을 동반한 피하출혈은 열상을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위등 물체에 가볍게 충돌하여 생긴 경상으로 인정되고 다만 좌전하퇴부(슬관절하)와 좌후주부(팔꿈치)의 피하출혈상은 상처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아 단단한 바위등 넓은 둔체와의 다소 강렬한 충돌현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검의 소견,

거문도-여수간 여객선 승선시 작성한 승선자 명부의 필적이 자필로 판명되고 여객선과 거문도 회망식당에서 식사할 때 동행자 없이 혼자라는 것이 판명되고,

이내창군이 신었던 영에이지 랜드로바 신 밑창 중 오른쪽 신 밑창은 특이한 흔적이 없고 왼쪽 신발 밑창 앞부분이 미끄러지면서 긁힌 흔적이 있고,

이내창군은 총학생회장으로서 등록금 동결, 총장직선, 하계수련회 개최 등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나 유서나 자살할만한 동기가 없고,

의사 추정지점은 해변으로서 직경 2-5미터가 되는 암석지대로서 보행이 가능하고 간조시에도 수심이 3-5미터가 되는 곳으로 대부분의 암석은 암석에 묻은 흙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미끄러운 지점 등과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이내창군은 총학생회장으로서 등록금 동결문제, 총장직선문제, 학생회간부 하계수련회 개최 등 학내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아 혼자 계속 고민 끝에 괴로운 심정에 학생회 업무를 일시 떨쳐버리고 무작정 하절기 피서지인 거문도 여행을 택한 후 8. 14. 밤에 안성에서 단독으로 출발, 야간 교통편을 이용 8. 15. 새벽에 여수에 도착 8. 15. 08:00 여수항 여객터미널에서 거문도행 신영고속훼리호를 타고 12:50경 거문항에 도착 14:00경 거문도 회망식당에서 점심식사후 15:30경 거문항 여객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난 피서객 남녀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촬영을 해준후 같이 나룻배를 타고 바다건너편 유림해수욕장쪽 연육교 공사장 제방에서 하선 약 750미터 떨어진 유림해수욕장까지 걸어간 후 다시 동쪽 해안 약 200-250미터 지점인 암석해변으로 걸어가서 무더운 날씨에 직경 2-5미터 되는 미끄러운 암석위를 오르내리다가 원발이 미끄러져 실족 추락하면서 좌전하퇴부와 좌후주부(팔꿈치) 등을 넓은 암석에 강력하게 충격함과 동시에 3미터나 되는 높은 파도에 휩싸이면서 두전부, 전액부사지 등을 다른 암석 등에 강하게 충격하면서 바닷물속에 빠져 질식사망한 후 심한 파도와 바람 그리고 조류에 의해 발견장소로 표류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공안당국에 의한 유인납치 살해 주장에 대해 “안기부에서 수사한 평축그림 슬라이드 제작 송출과 관련되어 구속된 차일환씨, 이태구군등의 사건과는 차일환의 진술과 안기부 확인 결과 이 사건과 관련 이내창군을 수배 또는 수사한 사실이 없어 유인납치되었다는 근거가 전무하고, 국민대생 김정환군이 8. 11.부터 8. 14. 08:00간 중앙대 안성분교 주변과 친구 이태형군의 자취방등에서 기거한 것을 근거로 보안사 요원이 깊이 개입 유인납치, 살해한듯한 주장은 김정환, 이태형 등의 진술에 의하면 김정환이 보안사 요원에게 도피중인 국민대 교지편집장 김정덕의 소재를 대라고 협박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내창군과는 중앙대학 안성캠퍼스에 은신중일 때 단순히 두 번 만나 인사하고 어울렸을 뿐 관계된 일이 없어 보안사에서 수사대상으로 지목되거나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보안사에서도 김정환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내창군을 수사 또는 수배사실이 전무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안기부 인천지부에 근무하는 타자수 도연주양과 그의 남자친구 백승희군등이 유인납치 살해했다는 주장도 덕성호 선장 이현우 등과 직접 대질 및 행적수사에서 이 사람들이 덕성호를 타고 유림해수욕장이 있는 서도로 건너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동인동이 이내창군을 유인납치 살해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다. 수사결과의 문제점

(1) 이 열사의 행적상의 문제점

이 열사 사건은 보안사에 의해 자행된 국민대학교 김정환씨에 대한 학원프락치 강요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김정환씨가 보안사로부터 석방된 다음날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피신하여 이 열사를 만났고, 피신 도중에 보안사에 전화를 하였으므로 보안사에서 김정환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4일 이 열사의 행동이 신원미상의 남녀 각 1인의 방문을 받은 후에 평소답지 않게 다급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위 신원미상의 남녀 각 1인은 사망 현장에까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은 위 신원미상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였다.

(2) 경찰의 수사상의 문제점

사체 촬영을 종전과 달리 촬영부위와 매수를 특정하여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사에게 임의로 적도록 하였다.

내방객에 대한 검문검색을 허술하게 하여 동행한 것으로 목격된 남녀 각 1인의 신원파악 및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학생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상조사단에 정보를 제공한 유력한 목격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3) 실족에 의한 의사로 볼 수 없는 문제점

사체 발견 당시의 모습은 하의, 양말, 신발만 착용하였고 상의, 안경, 시계, 혁대를 착용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모습은 실족에 의한 의사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한 유림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여 전방 50 내지 100미터까지의 수심이 약 1.4미터 정도밖에 안되고, 인근 해안에 실족한만한 지형이 뚜렷이 없고, 이 열사가 상당한 수영실력을 가진 점에 비추어 보면 실족에 의해 의사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의사한 것이라면 그곳 바다의 파도가 매우 세고 섬 주변에 바위 지역이 많으므로 사체에 수많은 상처가 남거나 찢겨지는등 파도에 휩쓸린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텐데 그러한 흔적이 없다.

(4) 타살의 가능성

이 열사 사건의 열쇠는 결국 동행한 남녀 각 1인이 누구이며, 경찰은 왜 이들을 밝혀내지 못했는가에 달려 있다.

상의, 안경, 시계, 혁대 등의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 역시 타살의 의혹을 짙게 한다. 즉, 이 열사와 이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고 그 결과 그 흔적이 남게되자 이 열사의 사망후 이들이 유류품을 없앴다고 볼 수도 있다.

사체의 외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얼굴의 상처(콧등의 피멍과 오른쪽 눈위에 찢겨진 상처)는 안

경을 쓴 상태에서 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팔과 다리의 상처 역시 사망 직전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처는 사망후 바다에 표류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격에 의해 생긴 것이다.

손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바, 이 역시 타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게 되면 바록 자살을 하려고 했더라도 절명 직전에 보호본능이 생겨 손으로 무엇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손톱이 빠질 정도가 되거나 지문이 없어질 정도가 된다고 한다.

3. 이철규 열사 사건

가. 사건의 경위

(1) 사망의 경위

이철규 열사는 1964년 5월 6일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관동부락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출생하였다. 장성군 삼서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광주 금호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 1980년 5.18을 체험하였는데, 부상자를 실어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1982년 3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입학하여 동아리 UNSA 활동하였고, 1985년 11월 외세 반독재투쟁위원회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 복역중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미국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7년 7월 6월 항쟁이후 사면조치에 따라 가석방 되었는데, 당시 조선대학교는 박철웅 총장의 전횡에 맞서 격렬한 반봉건 학원민주화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 열사는 출소후 곧바로 복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이 열사는 1988년 8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 2학기에 복적하였고, 1989년 1월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장으로 맡게 되었다. 1989년 4월 10일경 민주조선 교지 창간호가 발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4월 20일경 민주조선 편집위원 전원에 대한 수배조치가 내려졌고, 이 열사에 대해서는 현상금 300만원에 1계급 특진이 붙었다.

1989년 5월 3일 후배 생일을 위해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가던 중 광주시 북구 청옥동에 있는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하게 된 이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청옥동 4수원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989년 11월 4일 사인진상규명투쟁 178일만에 민주국민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여 망월묘역에 묻혔다(묘지번호 28-2).

(2) 이 열사의 5월 2일과 3일의 행적

5. 2. 15:00-18:00 : 조선대 “민주조선편집위원회”의 기획회의에 참석. 안경이 깨진 상태로 학교에 옴. 회의가 끝난 후 편집위원들이 남대협 비상간부대회에 참석하려 택시를 타고 전남대학교에 이철규 열사와 같이 도착(18:15-20경).

18:30경 : 점심을 먹지 않았고 수배중이어서 간부대회를 참석치 않고 전남대 후문에서 식사하겠다고 하면서 편집위원들과 헤어짐.

21:00경 : 학동 평화맨션 앞에서 박효(88년도 조선대 여학생회 간부. 당시 카페 ‘압록강 뚝은 잘 있을까’의 종업원. 후배)양과 ‘한다름’ 카페에서 만남. 이후 지산유원지 ‘수궁’에서 만나 맥주 한병을 시켜놓고 같이 먹다 한잔 정도를 남김.

23:30경 : 박효양을 학동 집에 데려다 주고, 1주일 전부터 침식을 하고 있던 운암동 94번지 소재 정구이씨(27. 제약회사 영업사원. 선배)집으로 귀가.

5. 3. 01:00경 : 정구이, 윤종남(31. ‘압록강 뚝은 잘 있을까’의 카페 주인. 선배), 심재수(21. 조선대 총학생회 홍보부. 후배), 이 열사 4명이 같이 잠.

09:00경 : 정구이씨 출근. 심재수씨도 곧 뒤이어 나감.

10:00-10:30경 : 9시 30분에 기상, TV 아침뉴스를 보고 세면하고 윤종남씨와 함께 출발. 택시를 타고 양동복개상가에서 이 열사 내리고(11시경) 윤종남씨는 미터기를 다시 작동하여 ‘압록강 뚝은 잘 있을까’를 향해 출발.

14:00경 : 호남대에서 정후태씨(22. 호남대 사학 3. 후배) 현관앞에서 이 열사 목격. 최영호(호남교 육신문 기자)와 정세 이야기중 정후태씨도 잠깐 같이 있다가 헤어짐.

15:00-16:00경 : 호남대 총학생회 복도에서 정후태씨와 이 열사 다시 만남. 정후태씨가 “학생회 일 관계로 잠깐 들렀다가 오겠으니 기다리시오”하니까 이 열사 대자보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함.

16:30경 : 정후태씨 대자보판 앞에서 만나 안부이야기를 나눔.

17:00경 : 두 사람은 후문앞 영홍식당에서 짜장면을 먹고 17:23경 이 열사를 택시에 태워주고, 정후태씨는 호남대 교지편집위원회 회의에 참가.

20:00경 : 운암동 소재 금호고등학교 버스 승강장앞에서 심재수씨 만남. 박효양 생일 잔치에 같이 가려 했으나 심재수씨가 9시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하얀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런닝과 팬티를 건네줌.

20:15-20경 : 중흥파크맨션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카페 ‘압록강 뚝은 잘 있을까’에 심재수씨가 전화를 걸자 박효양이 받음. 이 때 통화과정 중 윤종남씨가 이 열사에게 산수오거리에 있는 2층 송죽다방에서 만날 것을 제안.

20:30경 : 심재수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전남대 정문 앞에서 심재수씨를 내려주고 20:50경 이 열사 혼자 ‘길목카페’에 도착. 즉시 ‘송죽 다방’으로 전화하여 박효양과 통화

21:00경 : ‘길목카페’에서 이희복양과 이경미양(23. 호남대 의상학과 4 휴학. 후배)을 만남.

22:00경 : 이들과 헤어져 이 열사는 산장쪽으로 걸어가면서 택시를 잡으려 함. 22:06경 산수동 오거리에서 대광교통 이재민 운전기사의 차를 타고, 호반산장까지 4,000원에 가기로 합의.

22:12경 : 대광택시 4수원지 삼거리에서 검문을 받고 실종.

나. 검. 경찰의 수사결과

(1) 검문 경찰관들의 검문전 행적

1989년 5월 3일 18:00경 북부경찰서 김자술 경위(수사과 형사계 형사 1반장), 김남태 경장, 박재환 순경, 고재풍 순경, 박윤호 순경 등은 평상근무를 마치고 잔무를 정리한 다음 동일 18:30경부터 20:30경까지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있는 “도시바다”라는 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부근 로얄다방에서 차를 마신 다음 20:50경 제4수원지 부근 야간검문을 위해 동서 효죽파출소로 출발하였고 동 박윤호는 당일 비번이었음에도 근무요령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동행하였다.

(2) 검문 경찰관들이 검문 당시 이 열사의 신원을 알았는지 여부

검문 당시 이철규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였으며 검문 경찰관인 순경 고재풍이 신원을 확인하자, 자신의 이름은 아명이 “이중규”고 호적상 이름은 “이명규”라고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는 “650506-1661416”인데 호적상 “660506-1661416”이라고 다르게 말하고, 무전기를 이용하여 북부경찰서에 신원조회중 갑자기 도주하였으므로 검문 경찰관이 이철규인 줄은 알지 못했고, 경찰서에서도 컴퓨터 조회 결과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이철규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1989. 5. 8. 광주북부서에서 이철규를 수배함에 있어 담당 경찰관이 李哲揆의 한자이름 “揆”를 “환”으로 잘못알고 수배대장에는 “이철환”가 아닌 “이철환”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북부서 근무 경찰관들은 이철규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89. 5. 10. 이군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주민등록증을 수거하여 신원조회를 하였던 경찰관들도 이철규 이름이 “揆”자를 “계”로 잘못 읽어 이군의 본적지 경찰서에 “이철계”로 신원조회했다가 조회가 되지 않아 다시 “이철발”로 신원조회하는 등의 해프닝까지 있었다.

(3) 5월 3일의 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

0. 1989년 5월 3일 18:30~20:30경 북부경찰서 김자술(수사과 형사계 형사 1반장 경위), 김남태 경장, 박재환, 고재풍, 박윤호 순경 5명이 광주직할시 북구 우산동 소재 바다횟집에서 함께 식사후, 20:55경 효죽동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차량이 도착되지 않아 대기중, 의경 이치형이 운전하는 차량(광주 5가4833호 24인승 콤비)이 21:25경에 도착하여 승차하였음.

0. 21:33경 효죽동 파출소를 출발, 문화동을 경유 청옥동을 향하여 가던 중, 청옥동 사무소 앞에 이르러 박재환이 차량에서 내려 동사무소 앞 청옥상회에서 손전등용 건전지 2개를 구입하여 건전지를 교환하고, 시장에 왔다가 차를 놓쳐 서성거리고 있던 청풍동 신촌부락 거주 윤점례 등 2명의 여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청풍동 등촌 삼거리에서 여자 2명과 봇짐을 내려주고, 21:50경 청암교 삼거리에 도착함.

0. 그곳에 있는 공원감시소 바로 앞에 차량 앞쪽을 무등산장 가는 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경